역동경제 로드맵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Ⅰ. 총 론 1 1. 추진배경 3 2. 기본방향 5 3. 비전 11 Ⅱ. 10대 과제 13 16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19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23 4. 균등한 기회 25 5. 정당한 보상 27 6. 능동적 상생 29 7. 가계소득·자산 확충 31 8. 핵심 생계비 경감 34 9. 교육 시스템 혁신 36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38 Ⅲ. 향후 일정(로드맵) 41

Ⅳ. 참고자료

목 차

47

역동경제 로드맵

I

총 론

1. 추진배경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과거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달성

-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
 - * `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70년 대비 120배 이상, 수출액은 750배 이상 증가 (`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최초로 일본 추월)
- 기업가정신(기업), 높은 교육열(개인) 등 우리 국민의 내재적 역동성이 성장친화적 제도·정책과 결합되며 고속 성장 견인
 - 기업가정신과 다자무역체제(GATT, WTO)하 수출주도 전략이 결합되어 섬유·조선·반도체 등 끊임없이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 * `54년 산업은행, `76년 수출입은행 설립
 - 국민의 교육열*과 공교육 시스템**이 결합되어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
 - * '46년 초등교육 의무화로 해방 당시 78%였던 문맹률이 '69년 28%로 급격히 하락 ('60년대초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교육 수준은 이미 상위 중진국 수준 도달)
 - ** `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現 한국폴리텍), `72년 금오공고, `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공포(現 산업인력공단)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 주요국 대비 분배상황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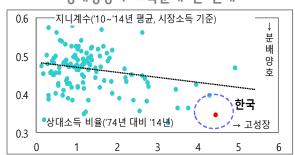
-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 불평등도 완화
 - * 절대빈곤율(%, KDI, '09년 보고서): ('82)86 ('87)59 ('92)14 / 지니계수: ('82)0.316 ('87)0.290 ('92)0.257
- □ IMF는 고속 성장과 양호한 분배를 달성한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Asian Miracle)"으로 평가
 - 특히, "고도화된 수출산업, 혁신, 높은 수준의 경쟁환경 등 역동성이 고성장·분배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평가(IMF, `21,2월)
 - ※ 아서 루이스(`79년 노벨상 수상)는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강조

1인당 국민소득(시장환율 기준)

9 (만\$) 6 한국 일본 미국 3 2.015 281 0 '70 '80 '90 '00 '10 '20'23

* 출처: UN, 한은('OO~'23년 한국 통계는 기준년 개편 반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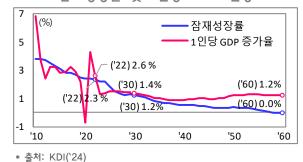


* 출처: IMF(`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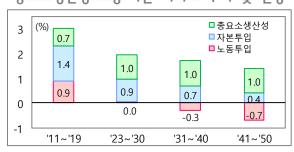
빠르게 식어가는 성장엔진

- '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 현재 **2%대 초반** 수준
 - *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 OECD): ('90년대)7.8 ('00년대)4.7 ('10년대)3.1 ('20년대)2.0 ('30년대)1.4
- 현 상황 지속시 성장률은 조만간 1%대 진입, '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 1인당 GDP 증가율도 1%대로 하락 우려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전망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기여도 추이 및 전망



* 출처: KD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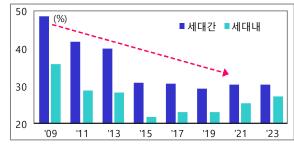
사회이동성도 약화

-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률 상승 등으로 '10년대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
 - * 기초연금 도입(`14),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7~) 및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 * 지니계수: [가계동향(도시 2인 이상 가구)] ('90)0.26 → ('98)0.29 → ('15)0.27 / [가금복(전체가구)] ('17)0.35 → ('22)0.32
- 그럼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
 - * 월평균 소득격차(5분위 2~4분위 평균 소득, 만원): (`10) 475 → (`15) 577 → (`20) 754 → (`23) 833 순자산격차(5분위 - 2~4분위 평균 자산, 억원): (`10) 6.2 → (`15) 6.8 → (`20) 9.0 → (`23) 10.9

지니계수 추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출처: 통계청(계층이동 가능성 '매우높다' + '비교적 높다' 응답률)

- ◇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 지속 약화 우려
- ⇒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긴요

2. 기본방향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

혁신생태계 강화

- ✓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 보장

- ✓ 균등한 기회
- ✓ 정당한 보상
- ✓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

- ✓ 가계소득·자산 확충
- ✓ 핵심 생계비 경감
- ✓ 교육 시스템 혁신
- ✓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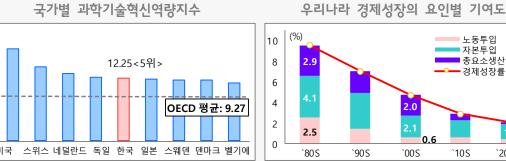
역동경제의 의미

- ◇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
- ☞ $^{\bullet}$ 혁신생태계 강화, $^{\circ}$ 공정한 기회 보장, $^{\circ}$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 구현

① 혁신생태계 강화: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

- ✓ 경제 성장은 일자리·소득 창출, 복지재원 확보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삶의 질 개선**의 필요조건
 -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혁신**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조건
- ✓ 우리의 혁신역량은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재편, 디지털 대전환, 서비스무역 급성장 등 여건 변화에 전략적 대응 긴요
 - 산업혁신,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혁신생태계 강화 필요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출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COSTII, '22년)

20

15

10

5

* 출처: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23.12월)

자본투입 총유소생산성

`10S

경제성장률

0.2 1.5 0.4

20~22

■ [과제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 (진단)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여력 약화 등으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도 지속 둔화**
 - * `16~`20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생산성본부): (韓)△0.2 (美) 0.5 (日) 0.3 (佛) 0.3 (獨) 0.1
 -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 수준 향상시 `60년 GDP·1인당 GDP 성장률 +0.8%p씩 제고(KDI, `24) [®]한국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시 향후 3년간('24~'26) 연평균 GDP 성장률 최대 1.8%p 제고 기대(베인앤컴퍼니, '24)
 - 기업 성장 정체, 중소기업·서비스업 저생산성 등이 경제 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년): (韓) 32.7 (佛) 58.5 (獨) 51.1 (스페인) 56.7
 -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달러〈PPP〉, 취업자 1인당, '21년): (韓) 65.7〈OECD 27위〉(OECD) 86.6
- ▶ (대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新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도약(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양자/바이오) 집중 투자)
 -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24.下 연구용역 → '25년 이후 공론화 추진)

- [과제❷]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 (진단)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으로 3대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도 지속 하락
 - * 성장기역도(%p, '90s→'00s→'10s→'20~'22년): [자본] 3.5→2.1→1.7→1.5 [노동] 1.4→0.6→0.6→0.4
 - ▶ (대응) 생산요소 질적 고도화,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 주력
 - 자본: 기업 밸류업*,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 * (법인세)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대비 5% 초과분) 5%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9%, 최대 45→25%)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중견 매출액 기준 폐지)·한도(600→1,200억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가업상속공제 대상(中企/중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화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 ²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25~'29)
 - ◎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 o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점 or 주사무소 특구 소재+특구 시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 **토지: 국토**(토지·농지·산지)**이용체제**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
 - * 투자보조금간 연계·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설정, 지역 재량 인센티브 한도 완화 등 검토
 - 노동: 첨단인재 양성, 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전략 마련(24.下)
- [과제❸]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 (진단)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확대
 -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도 발생
 - ▶ (대응) FTA 1위 국가 달성(통상정책로드맵 수립, `24.下), 공급망 안정화(기본계획 수립, `24.下),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 위한 맞춤형 전략(3대 거점 도약) 등 마련
- ② 공정한 기회 보장: 균등한 기회 보장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 기회 균등과 정당한 보상은 지속가능한 혁신과 사회이동성의 기반
 - ✓ 그러나, 독과점,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행위가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노사간 상생 구조·문화도 취약
 -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98) 21위 → ('08) 29위 → ('18) 33위 ⟨38개국 중⟩
 -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건, 공정위): (`20)455 (`21)459 (`22)498 (`23)584

■ [과제**4**] 균등한 기회

- ▶ (진단) 진입장벽*,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행위 등이 혁신 제약, 소비자권익 침해
 - * 스타트업 64.3%가 규제애로 경험, 스타트업 절반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로 진입규제 선택(경총, `24)
- ▶ (대응) 경제 분야 진입·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24.下) 통한 개선방안 마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확충(`24.下~)

■ [과제**⑤**] <u>정당한 보상</u>

- ▶ (진단) 근속연수 등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일-생활 균형 미흡
- ▶ (대응)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및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 *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공휴일 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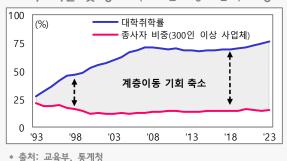
■ [과제**⑥**] 능동적 상생

- ▶ (진단) 기업간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 취약
 - * 기부 경험자 비중(%, 사회조사): (`11)36.4 → (`17)26.7 → (`23)23.7
- ▶ (대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공익신탁 등 기부 활성화
 - * 하도급·가맹사업·플랫폼 등 부문별 상생협력 촉진 위한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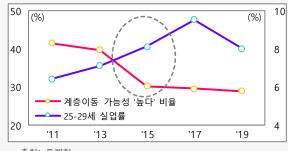
③ 사회이동성 개선: 세대내·세대간 이동 기회 확대

- ✓ 원활한 사회이동은 경제주체들의 혁신동기 촉발, 분배개선·사회통합의 기반
- ✓ 그러나,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이동성 기대 약화 → 혁신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

대학취학률 및 종사자(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계층이동 인식 및 청년(25~29세) 실업률



* 출처: 통계?

■ [과제⑦] 가계소득·자산 확충

- ▶ (진단)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 하회*,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기반 부족으로 청년-중장년층 격차 확대, 노인빈곤(`23년 40%) 지속
 - * 경제활동참가율(%, `23년): [청년] (한국)49.4 (OECD)60.5 / [여성(35~44세)] (한국)63.7 (OECD)75.3
- ▶ (대응)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 * 한국형 신속졸업 지원트랙 발굴·확산(`25~),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 전반 확대 검토(`25~)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 ** 청년도약계좌-ISA 등 연계 강화(`25~), 퇴직연금 제도개선(`24.下) 추진

■ [과제**③**] 핵심 생계비 경감

- ▶ (진단) 농업 저생산성, 높은 관세율 등 구조적 먹거리 물가 상승 요인 작용, 서민·중산층 선호 주택공급 부족, 고령화에 따른 의료·간병비 증가 등 지속
- ▶ (대응) 먹거리 물가 안정(농업 스케일업 및 먹거리 중심 관세율 조정), 주거서비스 혁신*, 의료비 부담 경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인원 확대)
 - * 도심 임대주택 최대 5만호 추가공급(\sim '35) /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 도입 \rightarrow 10만호 이상 공급(\sim '35)

□ [과제②] 교육 시스템 혁신

- ▶ (진단)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고교-대학-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도 미흡
 - * 상대적 교육비 부담 증가(`16~`23, %, 통계청): (학생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8.1 (물가상승률) 2.2
- ▶ (대응) 늘봄학교 무상지원 확대 추진, AI·SW 마이스터고 지정*(`24.下~), 대학 규제 완화,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5) 마련
 - * `27년까지 반도체, 디지털(SW·AI 등) 첨단산업 중심 10교 이상 추가 지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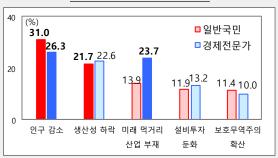
■ [과제**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 (진단) 빈곤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사회서비스 양과 질 모두 부족
 - 코로나 이후 부채 급증,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 (대응) 약자복지 지속 확대 및 근로유인 제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
 - *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월33.5→월40만원, ~'27) / 소득보장체계 근로유인 효과 연구용역('24.下)

【 우리 경제 역동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 일반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49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 ①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
- ② (생산성 향상)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연구개발(R&D) 촉진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성장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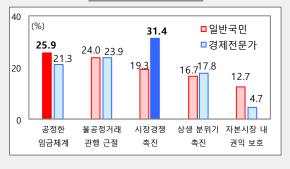
생산성 향상



- ③ (공정경쟁·정당보상) 일반국민은 직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체계, 전문가는 진입장벽 규제 완화 등 시장경쟁 촉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④ (계층 상향이동 촉진)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생계비 부담 완화와 가구소득 확충을 위한 청년·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특히, 일반국민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전문가는 주거비를 주요 생계비부담 요인으로 지적 → 구조적인 물가안정과 주거비 완화 필요

(%)	전반적인 물가상승	주거비	교육비 (사교육 포함)	의료비	교통·통신비
일반국민	39.3	29.8	17.4	8.5	0.8
전문가	33.2	36.1	27.2	2.2	0.3

공정경쟁·정당보상



계층이동 촉진



3. 비전

구 분		현 수준	비 전	비고				
1	①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수	^[23] 4만개	^[35] 5만개 이상	연평균 +5% 이상 [`13~`18년 평균 +4.4%]				
•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 32.7%	^[`35] OECD 평균 수준	^['21] 50 %				
	중견·대기업 일자리수 (250인 이상)	^[22] 506 만개	^[35] 800만개 이상	연평균 +4% 이상				
	서비스 신산업 비중 (ICT·전문·과학기술 서비스)	^[21] 15.3%	^[35] 20% 이상	^[21] 美·佛·英 19 %				
•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	^[`21] 6위	^['35] 세계 3대(G3) 강국	現 ^{1위} 미국, ^{2위} 네덜란드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ROE/PBR/PER	8.0/1.0/14.2 [최근 10년 평균]	^[35] MSCI선진지수 편입국가 평균 수준	11.6/2.5/19.7 [최근 10년 평균]				
자 본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23] 17 	^[35] 세계 3위 수준	^{[23] 1위} 미국(59개) ^{2위} 중국(12개) ^{3위} 영국(7개)				
	◆ 자본시장 접근성	^[`24] 20위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토	• 비수도권 GRDP 성장기여율	^[`22] 29.9%	^['35] 50% 수준	[`01~`14년 평균] 48.8%				
지	• 총고정자본 증가율 격차 (비수도권 - 수도권)	△ 2.0%p [최근 10년 평균]	^[35] 격차 해소					
노 동	• 첨단인재 양성		^[35] 5대 핵심 분야 첨단인재 양성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5	외국인 전문인력	^[`23] 7.2만명	^[35] 15만명 이상	2배 이상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FTA	^[`23] 2위	^[^27] 1위					
•	ODA	-	개도국과 상생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 구체화				
• 공급망		-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구체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	現 싱가포르, 홍콩				
2	② 공정한 기회 보장							
4.	4. 균등한 기회							
•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18] 33위	^[35] OECD 중위 수준					
• 경쟁당국의 글로벌 평가지수		^[23] 매우 우수	^[27] 최우수					

구 분	현 수준	비 전(`35년)	비고				
5. 정당한 보상							
• 임금체계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24)109→('27)200개				
6. 능동적 상생							
• 사회적 책임	^[ˈ24] 23위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 GDP 대비 기부금 규모	^['22] 0.7%	^['35] 1.0% 이상					
③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ˈ23] 71.1%	^[35] OECD 평균 수준	^['23] 73.7%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22] 399%	^[35] OECD 평균 수준	^[22] 481%				
• 노인빈곤율	^[23] 40.4%	^[35] 20% 이하	^[23] OECD 14.2% 미국 22.8%				
8. 핵심 생계비 경감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연평균]} +1.3%	^[35] +2% 이상					
• 수도권 주택보급률	^[22] 96.6%	^[35] 100%					
• 서민·청년 도심공공임대 공급		^[35] 최대 5만호	신규				
• 장기임대 서비스 공급		^[35] 10만호 이상	신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	^[23] 247만명	^[27] 400 만명					
9. 교육 시스템 혁신							
•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24] 17	^[35] 107H	英 대학평가기관 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23] 56%	^[35] 70% 이상	마이스터고 수준 ^[23] 74%				
•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	^[17~123] 6.4%	^['25~'35] 물가상승률 이하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	^[30] 전국 확산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2] 14.9%	^[28] OECD 평균 수준	^[23] 11.3%				
•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수 비율	^[21] 9.8%	^[35] 20% 수준	2배 수준				

역동경제 로드맵

 \prod

10대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 서비스 新산업 육성
- ▶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 ▶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 ▶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 전략적 ODA 확대
-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 4. 규동하 기회
- ▶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 5. <mark>정당한</mark> 보상
-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 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 6. 능동적 상생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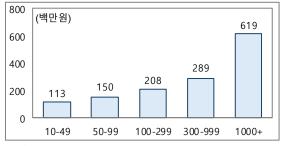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 7. 가계소득·자산 확충
- ▶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 8. 핵심 생계비 경감
- ▶ 먹거리 물가 안정
- ▶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 ▶ 의료비 부담 경감
- 9. 교육 시스템 혁신
-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 ▶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
- ▶교육비 부담 경감
-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 사회서비스 질 제고
- ▶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 * 1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점검·보완 과정에서 수정·추가 가능

1.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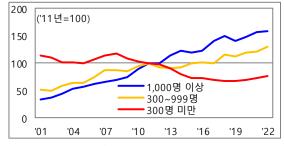
- 그간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자원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였으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 'O1~'20년 총요소생산성의 부가가치 기여율(%, 생산성본부): (한국) 14.7 (미국) 27.3 (독일) 43.7 (일본) 87.2
- 그러나, 우리경제 생산성은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 디지털전환 미흡 등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
 - * 총요소생산성 증기율 추이(%, 생산성본부): ('01~'05) 0.73 → ('06~'10) 0.66 → ('11~'15) 0.90 → ('16~'20) △0.18
- ** `16~`20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생산성본부): (한국) △0.18 (미국) 0.54 (일본) 0.25 (프랑스) 0.28 (독일) 0.13
- □ (기업) 기업이 성장(scale-up)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단계별로 존재
 - (창업·벤처) 초기 창업·벤처투자 지원은 크게 늘었으나, 민간 대규모 투자 부족, 회수시장 미발달*등 전반적 생태계 경쟁력은 아직 미흡
 - * 시드·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엑시트(Exit) 성공 비율(%, '18): (한국) 5.8 (미국) 12.3
 - (중소)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이 어렵고,
 기업 성장시 지원 급감, 분산된 지원사업* 등 성장친화적 지원제도 부족
 - * '22년 기준, 약 194만개 기업에 기업당 평균 0.39억원 지원(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중견·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 수가 크게 증가*
 - * 규제 수('23, 한경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183개 → 1조원 185개 → 2조원 209개 → 5조원 274개 → 10조원 342개
 - 규제 본연의 의도는 살리면서도, 과거와 달라진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취 시점에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
 -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고정(5조원 이상)되어 있어 지정 집단 수 지속 증가($'17년 57\% \rightarrow '24년 88\%$), 대기업집단 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에 핀테크 회사 제외 등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존재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22)



*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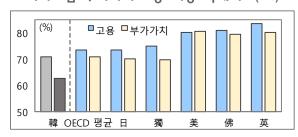
종업원수별 업체당 R&D 지출



* `11년 = 100, * 출처: 한국은행(`24)

- □ (산업)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경제 전체 생산성에도 악영향**
 - * OECD 국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US\$, PPP, '21): (韓) 65,657/27위 (OECD 平均) 86,618
 - **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productivity dispersion)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OECD, '24)
 - 영세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 미흡,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애로*, 주요국 대비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서비스 新산업 활성화** 지연 등이 생산성 부진의 주요 요인
 - * 그간 입법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갈등조정기구 설치 미포함

서비스업 부가가치·고용 비중 국제비교(`21)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21)



- □ (기술) 디지털 전환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 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
 - * 디지털전환 적극 추진기업은 9.7%, 전담조직 보유 기업은 2.1%, 전담인력 보유 기업은 6.2%에 불과(산업기술진흥협회, '21)
 - 특히, **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나, 우리나라 기술 역량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 시장규모 전망: (AI 반도체) '23년 523억불 → '27년 1,398억불 (양자시장) '22년 68억불 → '40년 1,060억불
 - ** 기술수준(한/중/EU, 미국=100, '22, 과기부): (AI) 78.8/90.9/87.5 (첨단바이오) 78.1/78.1/93.8 (양자) 65.8/91.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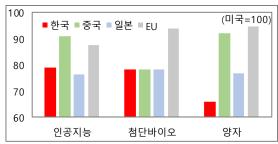
생성형 AI의 국내 성공적 도입시 기대효과



* 출처: 베인앤컴퍼니(`24.1월)



첨단기술 분야별 기술수준·격차('2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비전(지향점)

- ❖ 벤처기업 수: (`23) 4만개 → (`35) 5만개 이상 〈연평균 5% 이상 성장〉
-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 32.7% → (`35) OECD 평균(50%) 수준
- ❖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수: (`22)506만개 → (`35)800만개 이상 〈연평균 4% 이상 성장〉
- ❖ 서비스 新산업(ICT·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중(전체 서비스업 대비, %): (`21) 15.3 → (`35) 20.0 이상
- ❖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 ('23) 6위 → ('35) 세계 3대 강국(3위)

- □ (기업)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참고 p.49)
 - **(창업·벤처)「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24.下),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25~)
 - *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
 - ** (민간투자) VC펀드 대형화·전문화, CVC 투자비중 확대 등 (대·중견 협력) 대·중소 M&A 활성화, 대기업 스핀오프 가속화 등
 - (중소)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24.下),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25~)
 - *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3→5년) 및 점감구조 마련, 재정사업 점감구조 도입
 - **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추진
 - (중견·대)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下)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시작('25~)
 - * 예)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
 - 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 신속 추진('24下)
 -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개선(5조원 정액 → GDP 연동),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
- □ (산업) 서비스 新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 구축 및 유망 3대분야 집중 지원
 - (갈등조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25~)
 -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경제부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설치
 - (3대 유망서비스) ^{데이터}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4下), ^{공유경제}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24下), ^{모빌리티}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24~) 및 고도 자율주행 상용화(~~27)
- □ (기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 (AI-반도체)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24.下)하고,
 18.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24.下~)*
 - *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지속, 5조원 규모 재정지원('25~'27), 반도체 메기클러스터(용인평택 등) 인프라 신속 조성, 시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
 - (바이오)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24.下)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24.下),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 등 제도기반 마련
 - (양자)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상용화, ^{증장기}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 위한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25~)
 - * `25년 국가R&D 예산(O.17조) 전년 대비 32.1% 증가(「`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지역투자 부진 및 토지이용 규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 한계 →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 자본(자본+토지)/노동의 성장 기역도(%): ('80년대)4.1/2.5 ('90년대)3.5/1.4 ('00년대)2.1/0.6 ('10년대)1.7/0.6 ('20~'22)1.5/0.4

자 본

1. 왜 필요한가?

- 모험자본 미성숙 속 자본시장 저평가 등으로 혁신 투자자금 조달 곤란
- Ⅱ (모험자본) 민간 유입 부족으로 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투자 全 단계 애로
 - (벤처) 과도한 규제* 등으로 대출·공적자금에 의존** → 도전적 투자 어려움
 - * CVC 관련 외부출자·부채비율 규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미비 등
 - ** 신규 자금조달 기업(%, '22, 복수응답): (직접금융) 18.3 vs. (민간대출) 32.6 (정책금융) 29.9 (공공지원) 25.8
 - (스케일업) M&A·IPO 부진 등 스케일업 한계 → 100대 유니콘 中 1개 불과
 - * M&A 시장 규모(십억\$, `23): (韓) 49 〈전년비 △17% 감소〉(美) 1,448 (英) 283 (加) 226 (中) 171 (獨) 100
 - (프로젝트) 정책펀드 마중물 부족*등 인내자본 형성 미흡**→전략 투자 제약
 - * 건당 평균 투자금액: (모태펀드)15 / (혁신성장펀드)72억원 vs. 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투자금 4억불(14년 소요)
 - ** 해외 프로젝트 수주(억불): ('12) 649 ('14) 660 ('16) 282 ('18) 321 ('20) 351 ('22) 310
- ② (자본시장) 저평가 지속되며,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 ㅇ (주주화원)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
 - * 주요국 주주환원율(%, 배당성향+자사주매입률, `14~`23 평균): (韓)29 (美)91 (中)31 / (선진평균)67 (신흥평균)38
 - (지배구조)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 보호 미흡
 - *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ACGA, 아시아 12국 대상): (`16) 8 (`18) 9 (`20) 9 (`23) 8
 - (투자수요) 해외 증권투자*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
 - *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억불): (`15)69.6 (`17)139.9 (`19)196.0 (`21)703.5 (`23)771.0
 - ** 평균 주식 보유기간(개월, `19~`23 평균): (코스피)8.6 vs. (S&P)25 (니케이)12.9 (DAX)17.1 (FTSE)24.5
 - (접근성) 자본시장 개방이 제한적이고, 구조개선도 지연
 - * (외환)은행간 시장에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 가능 등 (주식)KRX 독점 등 (채권)국채통합계좌 미운영 등

2. 비전(지향점)

❖ ROE/PBR/PER(%, 배): ('14~'23) 8.0/1.0/14.2→('35)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11.6/2.5/19.7⟩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23) 1개 → ('35) 세계 3위 수준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 ('24) 20위 → ('35) 10위

- ① (모험자본 활성화) 시급한 법령개정*·제도개선**후 종합방안 마련('25, '4연구용역 선행)
 - * BDC 도입 등('24.下) / ** 수요예측 실효성 및 공모주 배정 합리성 제고 등 IPO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24.下)
 - (벤처)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25~)
 - * 예) 민간 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지속 추진 / ** 예)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 완화(40→50%)
 - (스케일업) M&A 인프라 개선*, 중·후기 투자 인센티브 등 스케일업 지원('25~)
 - * 예) M&A 중개 플랫폼 고도화, 中企 전문 M&A 중개인 육성 등
 - (프로젝트) 대규모·초장기 펀드 도입, 패키지 금융* 추진 등 혁신 투자 유도('25~)
 - * 예) 수은·무보 중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여건 조성,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협력업체 공동참여 특례보증 등
- ② (자본시장 선진화)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참고 p.51)
 - (세제지원)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24.下),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9%, 최대45→25%, '24.下)
 - *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24.下)
 - * (대상)中企/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rightarrow 中企/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한도)최대 600 \rightarrow 1,200억원
 -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24.下)
 - * ISA 납입/비과세 한도: 年 2천만원/200 → 年 4천만원/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 → 1,000만원〉
 - ❖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 가업상속공제 대상(中企/증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 **1**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 ②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25~'29)
 - ❸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 o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점 or 주사무소 특구 소재+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 (지배구조 개선 등)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사전승인 등) 등 이사 책임 강화('24.下)
 - 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 단축(3→2개월) 등 주총 내실화,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4.下)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평가·투자 유도('25)
 -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 지속 강구('25~)
 -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 (접근성 제고) 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25, 20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4.下), 외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 원활화**(~'27)
 - * (現) 고객이 외국환은행 등에 일일이 가격확인 및 구두 주문 ightarrow (改) 전자플랫폼 통해 실시간 통합가격 제공받고 주문
 - ** 예)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비거주자간 장외 채권거래 원화결제 자유화('24.下), 외국인 채권투자 환전절차 간소화('25~) 등

토지

1. 왜 필요한가?

- 지역 투자 부진,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 저해
- ① (지역투자) 지역 중점산업 쇠퇴 속 투자 유치 부족 등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 * 연평균 GRDP 성장률(%, ['O9~'15]→['15~'22]): (비수도권)3.0 → 1.6 (수도권)3.5 → 3.6
 - (지역산업) 해외 아웃소싱 확대, 지식정보화 대응 지체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 (혁신역량) 인력·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內 혁신 동력 부족
 - (투자유치) 중앙 중심의 분절적 지원 등으로 지역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한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

- 그간 대규모 재정 투입('O6~'21, 28O조)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
- OECD 국가들도 GDP대비 가족지출을 확대해 왔으나, 출산율 하락 경험
 - * OECD 국가(평균): [가족지출/GDP] (`87) 1.31→(`19) 2.11%, [합계출산율] (`87) 1.99→(`19) 1.60→(`21) 1.58명
- 실증분석 결과, 가족지출 확대보다 <u>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u> ※ OECD 평균수준 개선시 **출산율 제고효과**(한은, '23): (가족지출 확대) +0.055명, **(도시인구집중도 하락) +0.414명**
- 일본도 재정투입 위주 저출생 대응에 한계 → 「지방창생 종합전략*」 추진(`14) 및 도쿄 집중 해소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인구비전 2100」 발표(`24.1월)
- * 마스다 보고서('14), 저출산 주요 원인은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소멸, 지방소멸 관점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
- ② (국토이용) 국토이용체계의 획일·경직성으로 토지·농지·산지 이용 제약
 - * (토지)용도지역별 엄격한 개발 규제로 토지의 융복합 활용 저해 (농·산지)국토보전 목적의 중첩규제로 유휴 부지 활용 저조

2. 비전(지향점)

◆ 비수도권의 GRDP 성장기여율: (`22) 29.9% → (`35) 50% 수준⟨`01~`14년 평균 48.8%⟩
 총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비수도권-수도권): (10년¹³~²²² 평균) △2.0%p → ('35) 플러스 전환

- ① (지역투자확대)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육성 위해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 마련('24.下)*,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시 특구 제도와 연계** 지원('25~)
 - *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24.3~9) → 관계부처 협의 통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 ** 예)산단부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유치, 인근 도심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교육여건 제고
 - 기업-출연연-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25)
 - * 기업의 지방연구소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학-출연연간 인력교류·양성, 공동 R&D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등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전략」연구용역("24.下)*,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통해「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마련("25) (☞참고 p.52)
 - * 투자보조금 간 연계 및 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설정, 지역 재량 인센티브 한도 완화 등 검토
 -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제도 전면 개편과제 점진 시행('26~)

- ② (국토이용체계개편) 관계기관 협의회('24.下)* 및 연구용역('25)** 등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근본·종합적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 마련('26)(☞참고 p.53)
 - *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 ** (공동주관)기재부·국토부, (농지)농식품부, (산지)산림청, (환경규제)환경부 등
 - 유휴부지 활용 다양화 통한 농·산·어촌 소멸 대응 노력 지속('24.下)

노동

1. 왜 필요한가?

-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첨단분야 인력난 가중
 - * 생산연령인구 전망(만명, 15~64세): (`19)3,763 → (`23)3,657 → (`27°)3,518 → (`31°)3,381 → (`35°)3,188
- ① (첨단인재)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으로 첨단 인력 확보 난항
 - * 첨단인력 수준(IMD, '24, 67개국): (수준급 엔지니어공급)29위 (과학연구 관련 법률의 혁신 지원)35위
- ② (외국인력) 외국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전문인력 활용은 특히 미흡**
 - * 주요국 외국인 비중(%, `22): (韓)3.2 vs. (싱가포르)37.0 (獨)16.8 (英)14.3 (美)13.9
 - **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만명, '12→'23): (韓)5.0 → 7.2 (日)12.4 → 48.0'22
 - 가사·돌봄,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생활 밀착분야 인력 소요도 상당
 - * `22~`32년간 산업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만명, 한고원, `24.3월): (보건복지)7.9 (제조)13.9 (숙박음식)6.7 (농림어업)6.7

2. 비전(지향점)

❖ 5대 핵심 분야 첨단인재 양성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 외국인 전문인력 수: (`23) 7.2만명 → (`35) 15만명

- ① (첨단인재양성)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24.下)* 등 첨단인재 양성 전략** 추진
 - *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인재양성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인재양성사업(정책) 영향 분석 등
 - **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
 -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사내대학원 활성화 등 인재양성 체계 강화*('25~)
 - * 특성화대학(반도체·배터리, 13개교) 확대('24.下), 특성화대학원(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11개교) 확대('25), 사내대학원 (예: 기업內 AI 대학원) 공식인가('25),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예: 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 기술교육사업 운영) 확산 유도('26) 등
 - 4대 과기원 발전방안 마련(~24.下) 등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전략기술 연구자 양성
- ② (외국인력 확충) 비자 개선방안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마련("24.下)(☞참고 p.54)
 - ^{첨단분야}우수인재 특별비자 검토, ^{과학·기술분야}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24.下)
 - 외국인재 유입형 ODA 추진,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비자 개선 검토('24.下)
 -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 허용, 지역특화비자 확대^{*} 검토('24.下) * (現) 인구감소지역 → (改) 非수도권 전체
 - 외국인 정책 거버년스 일원화(총리주재위원회) 등 인재 유치기반 마련('24.下)

1. 왜 필요한가?

- 주요국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확대
-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 (대내여건)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속에 시장 확대가 긴요
 - GATT 가입('67), WTO 참여('95), 주요국과 FTA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오며 국민소득 3만불대 국가로 도약
 - * '23년 기준 FTA 발효국(총 59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1.8% 차지
 - 자유무역 기반 위에 수출·투자 운동장을 넓혀가는 것이 지속 성장의 필요조건
- □ (대외여건) 최근 지경학적 분절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에 입각한 자국 우선 주의 기조 확산
 - 주요국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호주의 대두,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재편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실패시 성장모멘텀 훼손 우려
 - *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수는 '12년 250개 → '22년 2,845개로 11배 이상 증가 (IMF, '23.6)
 -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분위기
- □ (대응방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 공고히 할 필요
 - FTA 고도화 및 확대 등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충적 통상협력 전개
 - * FTA를 매개로 한 양자·소다자 협력,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규범 형성, FTA外 다양한 통상협력 추진 등
 - 수출·수주·투자와 ODA 간 연계로 경제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
 - *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기반 마련
 - 공급망 리스크 등 위기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아시아·태평양 블록 투자거점으로서의 기회요인 포착에 역점

2. 비전(지향점)

- ❖ (FTA) FTA 전세계 1위 달성: (`23) 2위 → (`27) 1위
 - * 1위 싱가포르(87%) 2위 한국(85%) 3위 칠레(81%) 4위 페루(78%) 5위 코스타리카(71%)
- ❖ (ODA) 전략적 ODA 체계 구축으로 개도국과 상생 협력 강화
- ❖ (공급망)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 ❖ (아·태 비즈니스 거점) 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

- □ (FTA) ^{가칭}통상정책로드맵 수립·발표('24.下, 산업부) 및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참고 p.55)
 - ¹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²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³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 추진('24.下~)
 - * 신규: 말레이시아('24.3월 재개), 태국('24.3월 협상 개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기존: (중국) 서비스·투자 FTA 후속협상, (인도) 자유화 확대, (칠레·영국·ASEAN) 규범·경제협력 강화
 - ** 글로벌사우스 지역 중점무역관 확대(`2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24.下) 등
- □ (ODA) EDCF·공급망기금·정책금융 등 결합한 "K-Finance Package" 출범(24.下)
 - * 예)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ODA)-공급망기금-수은금융(非ODA)을 패키지로 지원
 - "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수립, 전략적 ODA 액션플랜 구체화('25)
- □ (공급망) 공급망기금(5조원) 지원을 시작("24.下)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마련("25~')
- □ (아·태 거점)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런('24.下)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 수행
 - * `25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체적 청사진 발표 및 기반시설 착공, `28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준공 추진

4 균등한 기회

1. 왜 필요한가?

-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
- 그러나, 과도한 규제 등 진입장벽,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등이 여전히 존재
 - * 상품시장 규제지수(`18, OECD): 33위/38개국,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23, 공정위): 584
- □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핵심 요소
 -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 내**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경제 **생산성** 및 국민 전체의 **후생 중진** 가능
- □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산재
 -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 스타트업의 국내 규제애로 경험 64.3%,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49.7%) 〈경총, `24〉
 -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中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이 17개로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23)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및 국내 기업 실태조사** 등 **국가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진입규제**는 **강한 수준**으로 평가
 -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역대 순위: ('98)21/28 ('03)22/30 ('08)29/34 ('13)32/35 ('18)33위/38개국
 - ** 스타트업의 37.7%가 '국내 규제강도가 경쟁국(美,中,日)보다 높다'고 답변('규제가 약하다'는 5.3%) 〈경총, `24〉
- □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제도 관행 등도 여전히 존재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민생경제**에도 **영향****
 -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건, 공정위): ('20)455 ('21)459 ('22)498 ('23)584
 - ** 예) 가구업체들이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격 등을 담합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24)
 - **산업별 협·단체** 및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시장 개입,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도 균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
 - * 예) 육계협회가 회원사들의 육계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22) 농축산물·수산물·한약재 등 다수의 영역에서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중
 - 기업이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부당광고로 가격·품질 등을 기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발생
 - * 예) 슈링크플레이션(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 등
 - ** 예)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 등

2. 비전(지향점)

-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18) 33위 → (`35) OECD 중위 수준
- ❖ 경쟁당국(공정위)의 글로벌 평가지수(GCR): (`23)매우 우수 → (`27)최우수
- []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규제 등 합리화 추진
 - * 주요 선진국(G7) PMR 순위(`18): 韓(33위) vs 美(34위), 獨(4위), 日(23위), 英(1위), 佛(29위), 伊(16위), 加(35위)
- ② '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적 경쟁제도 구현
 - * 우리 경쟁당국(공정위)은 영국 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6~'17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18년 "매우 우수"로 하락한 이후 해당 등급 지속

- ① (진입규제 등 합리화)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24.下) (☞참고 p.56)
 - * 부처·전문가 TF 구성, 부처별·분야별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DB 구축 검토
 -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규제 등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추진('25~)
 - * 예) (주류) 주류산업 경쟁력 TF를 통한 규제 진단·개선과제 발굴 \rightarrow 주류 생산·유통 단계 경쟁 제고
 - 협의 지연 및 재검토가 필요한 핵심 과제 선별, 필요시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활용 등 검토('26~)
- ② (선진적 경쟁제도 구현) $^{\circ}$ 불공정거래, $^{\circ}$ 제도·관행, $^{\circ}$ 소비자권익 침해 개선
 -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확충*('24.下~)
 - * 예)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공정위 보유 자료 법원 제공 활성화, 국민생활 밀접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등
 -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25~)
 - (제도·관행) 협·단체 및 수급조절위원회 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관행 실태조사('24.下),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행 등을 합리적 개선('25~)
 - (소비자권익)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제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 안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 추진('24.下~)
 - * 예) 광고 관련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제출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 ** 예)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지속 확대*('25~)
 - * 예)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을 통한 생필품 정보제공 범위를 가격정보뿐 아니라 용량정보까지 확대

1. 왜 필요한가?

- 공정한 보상 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 등 대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 □ (임금체계 합리화) 호봉제 도입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 * 〈기업의 호봉제 도입률(%, 사업체 기준)〉(고용부「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1,000인 이상 기업: ('21) 70.3 ('22) 67.9 ('23) 65.1 / 100인 이상 기업: ('21) 55.5 ('22) 55.2 ('23) 54.4
 - **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 시간당 임금비(정규직): ('21) 58.6 ('22) 57.6 ('23) 57.6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공정한 보상체계,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도 중요하다는 의견
 -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안정**,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결정** 및 **운영**이 필요
- □ (노동약자 권익보호) 영세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 구축 필요
 - * `22년 총 종사자 수 1,884만명 中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997만명(52.9%)(고용부 \cdot \cdot
 - 임금체불 규모는 최근 증가 추세^{*}로,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등 사업주 인식 개선도 필요
 - * 연도별 임금체불액(조원): (`19) 1.72 (`20) 1.58 (`21) 1.35 (`22) 1.35 (`23) 1.78
- □ (일·생활 균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률*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
 -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
 - **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 발생
 - * 1.1,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 발생,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 개인휴가 시에만 연휴 가능
 - **다양한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구축과 근로시간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동의〈비동의〉 비율(%): (근로자)44.2〈17.7〉(사업주)44.6〈16.5〉(국민)54.9〈15.7〉 (출처: 고용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23.11월)

2. 비전(지향점)

-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24) 109개 → (`27) 200개

- □ (임금체계 합리화)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 강화**('24.下~)
 - * `24.4월 총 327개 공공기관 중 171개 점검, 109개 기관 직무급 도입 → `27년까지 200개 기관 도입 목표
 - ** ^{●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KO-net)」 구축, [●] 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
 - *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 및 활용 매뉴얼,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등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
 - *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계속고용 확대 모델 모색 등
 - **최저임금委에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심의종료 후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점검
- □ (노동약자 권익보호) 임금체불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및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형사상 소송 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 등 검토('24.下~)
 - *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신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 「^{가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체계적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통해 노동약자 의견이 노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25~)
- □ (일·생활 균형)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4.下~)
 - * 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바로 퇴근(현행: 휴게시간 30분 의무사용 후 퇴근)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시간 사용의 선택권 확대 (☞참고 p.57)
 -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 마련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국가계약·중기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제공('25~)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24.下~)

1. 왜 필요한가?

-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자본 확충**은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의 원동력
 - * 사회적 책임(IMD 국가경쟁력 세부지표): ('19) 35위 ('20) 29위 ('21) 29위 ('22) 32위 ('23) 36위
- ** 국가번영지수(英 레가툼研, '23, 167개국): (종합) 29위, (경제) 9위, (사회자본) 107위
- □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비용을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 제도화 움직임 등 기업에 단순 이윤추구 이상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도,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
 - **기부**는 소득계층·지역·세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발적 재분배**이자, 정부 분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의의
- □ 아직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흡
 - **하도급*,** 가맹사업**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잔존
 - *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생산성 격차로, 원청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의 조정·협의 추진 곤란
 - **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선정,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
 -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입점업체간 갈등도 새롭게 등장
 -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판매 비중(%): (`17)16.4 (`19)21.4 (`21)24.6 (`23)25.4
 -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 요구 및 친환경 소비 트렌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ESG 경영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
 - * (대한상의, `21.12월 기업 설문조사) 응답자 70%가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ESG 개념에 대해 31.7%만이 알고 있으며 자사 ESG 경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
 - EU 중심의 기후공시 및 기업 공급망 내 환경·인권 분야 실사의무 부과 도입 등에 따라 관련 **기업의 부담 증가**도 **우려**
- □ **기부 경험**('23년 23.7%)은 10년 전('13년 34.6%)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향후 기부의사('23년 38.8%)에 비해서도 낮은 등 **기부 문화**도 **약화****(사회조사, '23)
 - * 기부하지 않은 이유('23 사회조사): (경제적 여유 없어서) 46.5% (기부에 관심 없어서) 35.2%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어서) 10.9%
 - **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12년 O.82%에서 `22년 O.70%로 감소(나눔실태 2022)
 - 기부 관심도 및 기부금단체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부 참여를 고취**하고 제도 개선^{*} 등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해 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확산** 필요
 - * 예)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총 36건 인가되었으며, `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
 - **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 기부금액(2.31조원)은 전체 종합소득자 기부금액(3.79조원) 대비 60.9% 차지,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40.6%)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가장 높음(나눔실태 2022)

2. 비전(지향점)

- ❖ 사회적 책임(IMD 국가경쟁력): (`24) 세계 23위 →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 ❖ GDP 대비 기부금 규모: (`22) 0.7% → (`35) 1.0% 이상

- □ (기업의 사회적책임·연대) 동반성장·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강화 및 ESG 경영 정착을 지원
 - (하도급)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강화 추진
 - *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확대(55개사 → 1,000개사), 연동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등('24.下~)
 - **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화('24.下~)
 -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24.下~),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을 지속 유도('25.~)
 - (플랫폼) 시장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플랫폼 상생협력 고도화*(24.下~)
 - * 예)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추진
 - (ESG) 민간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24.下~)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ESG 교육**,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진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제공
- □ (기부)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 지원 및 기부수단 다양화 등 기부 유인 확대(☞참고 p.59)
 - **기부금품 범위 확대^{*}, 기부의 날·기부주간 활용**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착한 기부자상' 시상** 등을 통해 **기부 관심도를 제고**('24.下)
 - * 모집가능한 기부금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 포함 추진(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정보공개** 및 모범적 활동 등 수행한 우수 기부금단체 사례* 확산**(′25)
 - * 사례)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부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A단체는 '19년 이후 380개 기부단체와 2000개 이상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3.8월 기준 누적 기부금 100억원 모금
 - ** 예) 나눔사례 확산, 정보공개 활성화 기여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포상
 - 공익신탁,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관련 제도별 개선방안*** 검토('25)
 - * 예) 공익신탁 귀속방식 다양화 및 투자가능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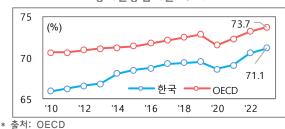
7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1. 왜 필요한가?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0년 4.7%p→'23년 2.6%p)
- □ OECD에 비해 낮은 **청년·여성**(30~40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초고령사회 진입 ('25년 전망)에 대비하여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성 · 연령대별 경활률(`23년, %)

	연령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OECD	남	64.9	93.0	92.5	86.5	33.7
	여	56.0	75.9	76.5	70.5	20.9
	계	60.5	84.4	84.4	78.3	26.7
한국	남	47.2	91.1	92.5	88.9	57.4
	여	51.6	70.0	67.4	69.1	37.7
	계	49.4	81.0	80.1	79.1	46.7

* 출처: OECD

- (청년) 대학재학·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20대 중후반에 첫직장 취업, 평균 첫직장 근속기간도 1년 7개월 수준
 - *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졸업후 첫취업 소요기간 8.2개월, 첫직장 퇴사 비율 66.8%(경활 부가조사, '23.5월)
 - 청년 절반(49.4%)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가운데 졸업전 직업훈련 경험 청년비중 9.1%, 정보 부족으로 취업지원 정책 미활용 청년도 상당수
 - *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 활용 비중 32.7%, '정보탐색 어려움'(40.6%), '모름'(38.1%) 등의 이유로 미활용('22년 중기중앙회)
- ② (여성) 돌봄인력 부족¹⁾, 남성 육아지원제도 활용 미흡 등으로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이 여전히 높아²⁾ 경력단절 및 M-Curve 현상 발생
 - 1) 돌봄인력 부족 규모: (`22년)19만명 → (`32년)38~71만명 추정('24년 한은)
 - 2) [남성 가사분담률] 16.5%(OECD 33.6%), [육아휴직 사용도] OECD 23개국 중 21위, [일-가정 양립지수] OECD 41개국 중 35위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00년대 이후 여성 경활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활률과 출산율간 (-) 상관관계
- **③** (중고령층)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 퇴**직(52.7세), **전직 준비 부족** 등으로 **재취업 소요기간 장기화**¹⁾ 및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²⁾
 - 1) 퇴직 후 재취업 소요기간: (50대) 13.6개월, (60대 이상) 19.1개월(22년 중장년 실태조사, 경협)
 - 2) 前직장 대비 임금수준 71.6%(23년 한고원), 55~64세 단순직 비율: (주된 일자리) 16.9%→(재취업) 30.8%(23년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2. 비전(지향점)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23) 71.1% → (`35) OECD 평균(`23년 73.7%) 이상

3. 향후계획

〈 청년 〉

- □ 취업애로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마련('24.下)
 - * 예)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한부모 청년,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등
-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여 취업애로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24.下~)
 - * (1단계; `24.下)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2단계; `25.下)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 (3단계; `25.下) 고용24(온라인고용센터)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 □ 탄력적 대학 학사운용 통한 신속 졸업트랙*, 대학-기업이 공동 학사과정 설계·운영하여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업 인재양성 모델 발굴·확산('25~)
 - * 예)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예: 5.5년),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과학고·영재학교 간 공동 AP 과정 등

해외사례 신속졸업 지원 및 대학-기업 공동 학사운영 사례

- ▶ (신속졸업 지원 사례) [●]美 AP(Advanced Placement):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 성적에 따라 학점 취득 [®]美 DE(Dual Enrollment):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 동시 인정
- ▶ (대학-기업 공동 학사운영 사례) 독일 뮌헨 공대와 지멘스社는 공동으로 산업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기반 직무훈련(PBL), 인턴십·채용 기회 등 제공

〈 여성 〉

- □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 사업* 운영('24.下), **'25**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검토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 `24.下) → 본사업(1,200명, `25),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5,000명, `24.下)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시범사업(400명, `24.7월)
- □ 육아휴직 급여 상향('24년 150만원 → '25년 250만원) 등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 기반 마련('25~)

〈 중고령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24.下)

해외사례 일본의 계속고용("고용 확보 조치") 도입 사례

- ▶ (개요)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中 선택) 도입 의무화('06년~) → 65세 고용확보조치 도입률은 99.9% 수준('22년 기준)
- ▶ (특징) ①오랜기간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제도 도입, ②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담 완화, ③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완화
- ▶ (성과) 60세 이상 상용노동자 '14년 287.2만명 → '23년 456.7만명으로 59% 증가
- □ **중장년충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통해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5)
 - * 예) 퇴직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재취업 지원서비스 자율적 도입 확산('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 제공 의무화) 등

가계자산 확충

1. 왜 필요한가?

-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자산형성 사각지대 보완 필요
- □ (청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청년층 부채 증가*로 청년층 자산형성이 저해되고, 청년·중장년층간 순자산 격차도 확대**
 - * 가구당 부채 증감율(%, `18→`22): (전체) 19.6 (2O대↓) 93.5 (3O대) 39.8 (4O대) 22.0 (5O대) 22.0 (6O대↑) 12.4
 - ** 50대 대비 순자산비율 증감율(%p, `18→`22): (20대↓) △2.6 (30대) △3.1 (40대) 0.2 (60대↑) △1.4
 - 취약계층 청년은 낮은 소득, 높은 생계비로 자산형성 여력 부족
 -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20): (자립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 월 168.5만원 ↔ (세후 월급) 월 182.2만원
- □ (중장년)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률이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음
 - * '23년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만명 중 대부분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추정(국회입법조사처, '24)
 -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기업률(%, '21): (5인미만)11 (5-9)33 (10-29)57 (30-49)73 (50-99)80 (100-299)87 (300인 이상)91
- □ (노년) 근로소득 감소 및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으로 자산 유동화 필요
 - *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억원, '23): (30대이하)3.4 (40대)5.6 (50대)6.0 <u>(60대이상)5.5</u> □ 부동산 보유액(억원, '23): (30대이하)1.8 (40대)3.8 (50대)4.3 <u>(60대이상)4.3</u> 노인빈곤율(%, '23): (한국) 40.4 ↔ (OECD 평균) 14.2 (美) 22.8 (日) 20.0

2. 비전(지향점)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22) 399% → (`35) 481% 〈OECD 평균〉
 노인빈곤율: (`23) 40.4% → (`35) 20% 이하 〈`23 OECD 평균 14.2%, 미국 22.8%〉

3. 향후계획

- □ (청년)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ISA 등과 연계 강화('25~)
 - * 디딤씨앗통장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ISA 일시납 허용 등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24.下), 디딤씨앗 통장 대상확대 검토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각지대 보완('26~)
- □ (중장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24.下),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검토('25~)
- □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24.下)

1. 왜 필요한가?

-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
- ① (먹거리) 기후변화·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구조 문제, 해외 공급망 불안 등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
 - 청년 농업인 유입 부족, 영세농 중심 구조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가운데, 농업법인·스마트농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美 USDA) : (아이슬란드)106.7 (포르투갈)86.1 (칠레)25.9 (폴란드)19.8 (터키)15.9 (아일랜드)12.5 (룩셈부르크)12.2 (독일)10.1 (프랑스)9.8 (노르웨이)8.7 (한국)8.3
 -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적인 **공영도매시장 중심 거래**(52%, '22) 등 **유통단계** 비효율로 인해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49.7%, '22)
 - 이상기후 영향, 국내 농업자원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수준 수입은 불가피 하나,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 관세부과율(%, `22): [전체]1.49 (육류)6.95 (어류)8.39 (낙농품)9.61 (채소)23.43 (과일)7.93 (커피·차)4.72 (제분)8.83
- ② (주거) 자가·임대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청년·중산충 니즈에 맞는 특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 확대
 - 가구 분화, 주거방식 다양화에 대응하기에는 주택재고가 주요국 대비 충분치 않고* 특히,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하회하는 등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
 - * 국가별 인구 천명당 주택수(백호) : (이탈리아)6.0 (프랑스)5.9 (스페인)5.6 (독일)5.2 (일본)4.9 (OECD 평균)4.7 (한국) 4.3
 - 임대주택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공공은 청년층 니즈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이 제약
 - (공공) 주택공급 실적은 양호하나, 청년층 선호 도심지 물량 부족*
 - * 서울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20) 32.9 ('21) 39.8 ('22) 54.1 ('23) 90.6 ('24.1~4월) 255:1
 - (민간) 영세·단기, 비등록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서비스 시장 형성이 제약
- ③ (의료) 고령화, 비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28조원, '23년 누적)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 총 진료비(조원, 건보공단) : (`18)93.3 (`20)102.8 (`22)120.6 / 사적 간병비(조원, 복지부) : (`08)3.6 (`18)8.0 (`22^{추정})1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15)에도 **공적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며, 현행 비급여·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혼합진료 유인**,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선택에 애로**

2. 비전(지향점)

- ❖ (먹거리)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美 USDA): (`15~`21 연평균) 1.3% → (`35) 2% 이상
- ◆ (주거) 수도권 주택보급률: (`22) 96.6% → (`35년) 100% 달성 /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통한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 공급 /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호 이상 공급
- ◆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 선진국 수준 확대('23년 247만명 → '27년 400만명)+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3. 향후계획

- ① (먹거리) 농업 생산성 제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 강화 (☞참고 p.60)
 - (생산성) 공동영농모델*(주주형·임대형 등)의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농형태 인정,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한 농업 스케일업 추진('24.下~)
 - * (예시) 경북 문경 이모작 공동영농모델(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 영농조합법인은 발생소득을 농가에 지급)
 - (유통구조) 온라인 도매시장을 가락시장 수준(年 5조원, '23년 거래량의 30%)으로 활성화(~'27)하고 스마트APC 확충(14→100개소, ~'26), 거점위판장 현대화 등 지속
 - (해외공급)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고, 식품원료·원자재 등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 등 해외공급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의견수렴 추진('25~)
 - *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에 근거하여 과학적 증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절차 진행 중(32개국, 77개 품목)
 - ** 국내 생산 여건, 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 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 분석 등
 - 반입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농업자원 반입 활성화('24.下~)
- ② (주거)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 (☞참고 p.62)
 - (주택공급)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27)하고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24.下~),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24.下~) 등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 지원
 -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24.9) → 시범사업 **10**개소 착수(~'25) →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 공급(~'35)
 - (민간임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24.7)하고, 시범단지 사업 착수('25.上) →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35)
 - (부동산 PF)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24.下),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안 발의('24.下), PF 사업장 연착륙 등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 ③ (의료)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참고 p.6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배치 확대('24.下), 병상 참여율에 따른 평가 강화('25~),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26~) 등 추진
 -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 수도권은 6개 병동(기존 4개)까지 참여 확대
 - **(건보재정)**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24.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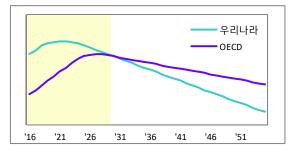
1. 왜 필요한가?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완화와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 필요
 - * 우리나라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1위(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3, INSEAD)
- □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INSEAD, '23)이며, 최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대학교육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24, IMD평가)

	대학교 육 지수	대학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
중국	3위	14위	14위
미국	1위	28위	12위
인도네시아	54위	25위	27위
영국	2위	37위	28위
인도	9위	34위	39위
한국	12위	46위	20위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13)



- (대학교육) 대학교육 국제경쟁력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학생 교육비 투자** 등으로 경쟁력 저하 추세
 - * 대학교육지수: (`19) 24위 → (`24) 12위(67개국 중) / 대학교육 경쟁력(IMD): (`19) 55위 → (`24) 46위(67개국 중)
 - **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만원, `22, 교육부): (서울대) 5,804 vs.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 평균) 2,230
- ② (직업계고) '08년 마이스터고 신설 등 직업계고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취업률* 및 입학자수 감소** 추세
 - * 취업률은 'O8년 대비 '17년 약 3배 증가(18.5~52.4%)하였으나 '23년 27.8%로 감소(교육부)
 - ** `12년 대비 `22년 입학자수는 일반고는 △29%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7% 감소(교육부)
 - 반도체·디지털(SW·AI) 등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대응 및 취업-후진학-직장 안착 등 졸업 이후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 성장경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③ (유·초중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쏠림 및 교육비 부담 완화* 필요
 - * 상대적 교육비 부담 증가(`16~`23, %, 통계청): (학생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8.1 (물가상승률) 2.2
- ④ (평생교육) 상호보완적인 평생교육-직업훈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에 한계, 기관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 발생
 - 평생교육・직업훈련 등 근로자의 업스킬(up-skilling)·리스킬(re-skilling)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며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 심화
 - * 신기술분야(디지털, 바이오, 소재·부품 등) 5년간('24~'28) 인력 42.8만명 부족 전망('24, 직업능력연구원)

2. 비전(지향점)

- ❖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24) 1개 → ('35) 10개 〈영국 대학평기기관 QS Ranking 기준〉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23) 56% → ('35) 70% ('23년 마이스터고 취업률: 74%)
- ❖ 참여 학생 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 ('17~'23) 6.4% → ('25~'35) 물가상승률 이하
-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전국 확산(`30)

3. 향후계획

- □ 全주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 **1** (대학교육)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가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24.下),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 완화*('25~)(☞참고 p.66)
 - *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단계적 추진
 -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패키지 개혁 추진*(24.下)
 - * 예) ① 캘리포니아 UC대학을 벤치미킹하여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 도입—캠퍼스 특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② 대학 주요보직 임명 관련 규제 특례 적용 검토 (현행) 교원만 주요보직 임명 가능 → (개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가능토록 검토
 - ③ 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 완화 : (현행) 산업체 소유·암차사설에서 이동수업 가능 \rightarrow (개선) 일정 구역 내 학교 소유사설까지 허용
 - ② (직업계고)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마련,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등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 추진(*25~)(☞참고 p.67)
 - * $^{\mathbf{0}}$ 취업(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mathbf{0}}$ 취업 후(역량개발, 후학습 지원 등) $^{\mathbf{0}}$ 진학(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 확대 등) 맞춤형 지원 ** 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활용한 첨단분야 개편 컨설팅 지원, 직업계고 교원 역량개발 지원 등
 -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시 반도체·디지털(SW·AI 등)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추진**('24.下~)
 - * 지지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성장·정주 지원(`24년 10개교→27년까지 25개교 추가 선정(35개교)) ** `23년 54개교 운영 → `27년까지 반도체, 디지털(SW·AI 등) 첨단산업 중심 10교 이상 추가 지정 예정(65개교)
 - → AI 또는 SW 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현재는 SW 마이스터고 5개교 운영 중))
 - ③ (유·초중고)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유보통합, ^{초등}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 지속 추진
 - * 사교육 수요 대체 위해 방과후학교 내실화, 놀이중심의 영어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교과·학년 확대 등 검토('26~)
 -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 상향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으로 임기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27)
 -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26)하고 방학 포함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늘봄학교 비용 무상 지원 확대 추진('26~)
 - ④ (평생교육)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全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24下)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25) (☞참고 p.68)
 -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 사례(미국·독일·프랑스 등)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30년까지 전국 확산

1. 왜 필요한가?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병행 필요
- 과밀화 등 구조적 요인, 내수회복 지연 등이 복합 작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심화
- □ (약자보호)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
 - *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22): (한국) 14.8% (OECD 평균) 21.1%
 -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근로유인 구조개선** 필요
 - * (국정과제 43-1)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기준중위소득 35% 목표)
 - **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시간 투입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
- □ (사회서비스)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요구 증가**
 - * 사회서비스 개념(협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총칭
 - **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상 주요 애로사항(^22,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화 연구): 바우처 단가의 경직성(21,2%), 제공인력 구인 어려움(12,5%)
 - ※ `22년 종사자 규모별 공급기관 비중(%): (1~4인)23.5 (5~9인)35.9 (10~19인)22.9 (20~99인)16.3 (100인 이상)1.4
- □ (소상공인 지원) 과밀화 등 구조적 요인과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
 - 자영업의 낮은 진입장벽 등에 따라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경영부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 소상공인 창업동기(소상공인 실태조사 '23.12월): (취업난, 소득 등) 34.3% VS (자신만의 사업경영) 64.5%
 - ** (대출잔액) '19년 685조원 → '22년 1,020조원 (+335조원, +49%)
 - 소상공인의 **여건에 맞추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사**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워** 필요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조원) : (`19)136.6 (`20)158.3 (`21)190.2 (`22)211.1 (`23)228.9

[해외사례]

• '21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 (OECD 30개국 평균) 17% VS (우리나라) 23.9%

'21년 기준	하고	프랑스	이ㅂ	도이	도이	이보 도이	일보 도인	일본 독일	이보 도인	미국	이스라엘	шағс	노르웨이	유로	OECD
21년 기군	인독	=8=	ᇎ	ᇎ	국일	~ -	이끄러할 테달린드	다엘 네닐단드	ㅗ 프퀘키	(27개국)	(30개국)				
자영업자 비중	23.9	12.6	9.8	8.8	6.6	12.4	15.8	4.7	14.5	17.0					

* OECD 기준 자영업자 =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 출처: OECD

2. 비전(지향점)

- ❖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2) 14.9% → (`28) OECD 평균 수준(`23년 11.3%)
- ❖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수 비중: ('21) 9.8% → ('35) 현재의 2배 수준(20%)

3. 향후계획

- □ (약자보호)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7) (☞참고 p.69)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 추진('24.下)
 - * 탈수급 경계선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25~)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下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마련("24.下)
 - * 노·사·정·전문가 참여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개선안 논의 중('23~)
-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24~),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마련('25~)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의 제공 인력 전문성 등을 조건으로 가격을 차등화하는 가격 탄력제 시범 적용('24~)
 - ** 예)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투자유치 역량교육 및 투자사 연계 지원 등
-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 별로 맞춤형 지원 통해 재도약 지원
 - (경영안정)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 촉진*
 - *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24.下) 및 소공인 우선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제한업종 축소, 골목형상점가 지정확대, '24.下)
 - (성장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대형화^{**}를 통해 소기업으로의 성장 유도
 - *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제공,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보급 확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25.上) 등
 - ** 소기업 성장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 제공(중진공)('25)
 -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24.下, 지원범위 등 요건완화)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추진('25~)

역동경제 로드맵



향후 일정(로드맵)

구분		`24.下	`25	`26~	
1	혁신생태계 강화	<u></u>			
1.	생산성 높은 경제	I시스템 구축			
		·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 민간투자 촉진 및 대기업 협력	확대 등 벤처기업 스케일업 강화	
	기 <mark>업 성장사다리 구축</mark> 기재·공정·중기)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 협업예산 등 재정사업 재편 · 성장친화적 기업 지원체계 개편 연구	· 성장친화적 재정·금융 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	
		· 기업규모별 규제개선 연구 · 기업규제 신속 법령 개정	· 사회적 공론화 추진(`25~)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운영('Z	25~)	
(서비스 新산업 육성 기재·문체·국토·과기)	▸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 공유숙박 제도화 ▸ MaaS 시범사업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 고도자율주행 버스·셔틀 상용화	▶ 고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27)	
		· Al법(과기부) 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AI법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 반도체 금융지원 개시 ·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연장 · 반도체 5조원 규모 재정지원	<u>.</u> 확대(~`27)	
!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기재·과기·산업)}	▶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신속 조성	·용인 일반산단 첫 Fab 공사 착공	·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조성 공사 착공	
,	기세·파기·신입 <i>)</i>	· Al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 바이오 규제 로드맵 마련	·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 바이오 규제개선 추진	·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양자 R&D예산 대폭 확대	· 양자분야 전략적 R&D ·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	▶ 퀀텀(양자) 플랫폼 운영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	· 모험자본 활성화 연구	· 모험자본 종합방안 마련		
	■ 모험자본 활성화 (중기·금융·공정 ·기재·산업)	·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	· 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25~) · M&A 인프라 개선 등 스케일업 지원('25~) · 대규모·초장기 펀드 도입, 패키지 금융 등 추진('25~)		
자 본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외환시장	▸ 밸류업 세제·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ETF 상장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 보완방안 강구(`25∼)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접근성 제고 (금융·법무·기재)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추진	▶ 증시 대체거래소 출범	·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급퓽'립구'기세)	· 국채통합계좌 원화결제 자유화	·외국인 채권투자 환전절차 간소화('25~)		
	■ 지역역신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 투자	▶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 지역 발전전략 연구	 ⁺ 국가첨단산업단지-특구 연계 ⁺ 지역전략산업 인센티브 강화 ⁺ 지역 R&D 지원제도 개선 	I	
토 지	유치에도 전면 개면 (산업·교육·과기 ·행안·국토·기재)	 기업유치 통한 지역 발전전략 연구 (예시: 투자보조금 간 연계·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검토 등) 	▶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방인	· 마련(`25) 및 추진(`26)	
	■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기짜국토·농식품산림)	▶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 범부처 연구용역	· 관련 법령 정비 ·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 마련	
	■ 첨단인재 양성 (과기·교육·사업)	→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추진→ 4대 과기원 발전방안 마련	사내대학원 공식인가 추진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 확산 유도	
노 동	(과기·교육·산업)	▶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확대	▶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 확대		
0	■ 글로벌 인재 유치 (법무산압고용기재)	·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마련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이	행 및 보완	

구분	`24.下	`25	`26 ~		
3. 글로벌 네트워크	크 확장				
■ 글로벌 네트워크	^{가칭} 통상정책로드맵 수립	→ 글로벌 사우스 지역 중점무역관 확대	› 글로벌 사우스 지역 무역금융 확대·협력과제 발굴		
- 글모글 네드워그 1위 국가 도약 (산업·기재)	* 신규: 말레이시아(`24.3월 재개), 태글 기존: (중국) 서비스·투자 FTA 후속학	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상 가속화 N) 규범·경제협력 강화		
■ 전략적 ODA 확대 (국조·기재·외교)	· "K-Finance 패키지" 출범 · 민간전문가 양성체계 시범구축	▶ 제4차 종합 기본계획 마련 ('26~'30)	· 한국형 시그니처 ODA 모델 발굴 및 성과 가시화 추진		
	· 공급망기금 개시(5조원)	• <mark>공급망기금 확대 추진</mark> (10조원) • 국회 보증동의 필요	·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확대 (~`27)		
■ 공급망 안정화 (기재·산업·외교)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25~`27)	· 공급망 분야별 유망 중소 기업 육성전략 수립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 10개 이상 발굴(~^27)		
■ 아·태 비즈니스 거점 도약	·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 맞춤형 전략 마련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체적 청사진 발표	› 용산 1호 글로벌기업 아태본부 입주(~'30년대 초)		
(산업·국토·기재·서울시)		▶ 기반시설 착공	· 기반 시설 준공(`28)		
② 공정한 기회 보	.장				
4. 균등한 기회					
■ 진입규제 전면 정비 (기재)	· 경제분야 진입규제 및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	▶ 핵심규제 등 선별개선방안 미련	·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활용 등 통해 핵심규제 조정안 미련 추진		
	▸ 불공정거래 법·제도 개선	·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25~)			
■ 공정경쟁 기반 구축 (기재·공정)	♪ 경쟁 관련 제도·관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기반한 개선방안 마련·이행(`25~)			
	· 소비자권익 법제 개선(^24.下~)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25~)			
5. 정당한 보상					
■ 근로시간 및	▶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 확대(2	200개 기관 도입 목표, ~`27)			
임금체계 합리화 (고용)	 ・ 민간 임금체계 전환 인프라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 	•	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 노동약자 권익보호 시스템 그츠	· 임금체불 제도개선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 추진 			
시스템 구축 (고용)	ㆍ노동법원 도입 검토				
= 이,새하 그런 드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			
■ 일·생활 균형 도모 (고용·인사처)	· 휴일제·휴게시간·급여 지급차	체계 연구	·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		
	ㆍ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	탕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24 .	下∼)		

구분		`24.下	`25	`26~		
6. 능동적 상생						
■ 기업의 사회적		·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조성 지속			
책임·연대 강화 (기재·산업·중기		→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법령 개정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 유도		
·과기·공정·방통)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근거규정 마련	· 자율규제기구 등 통해 플랫	폼 상생협력 가속화 추진		
■ 기부 문화 확신 (기재·행안·법무)	ŀ	· 기부금품 범위 확대	· 공익신탁 등 기부제도 개선 검토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 기부제도 개선 추진		
③ 사회이동성	개선	<u> </u>				
7. 가계소득·자신	난 획	숭				
	청	· 취업애로청년 경활률 제고 등을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ㆍ신속졸업트랙 및 산학협업	인재양성모델 발굴·확산(`25~)		
	년	취약계층 청년 자립후자산형성방안 연구	▸ 디딤씨앗통장·청년도약계좌 ISA 일시납 허용	다듬씨앗통장 대상확대 검토등 자산지원 사각지대 보완		
■ 가계 소득 자산	여	→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외국인	인력 취업 확대 검토(`25~)		
확충(교육·고용·	성	요양보호사 시범사업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법무·저고위·기재			→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기	기반 마련		
·복지·금융)	중고 령	›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중장년 전직·재취업 방안 마련	→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 방안 마련			
		→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중장년층 전직지원 인프라	확충(`25~)		
		▶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구				
8. 핵심 생계비	경검	<u></u>				
		▶ 공동영농모델 확산기반 마련	년 및 농업 스케일업 추진(`24.T	5~)		
		▶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 해외공급 확보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 추진(관세율 조정 등, '25~) 			
■ 먹거리 물가 인	ᅡ저	· 반입명령 제도개선 등을 통	해 해외농업자원 반입 활성화(`24	I.下∼)		
기재·농식품부·해	-	·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산단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스마트APC 획충/수산물거점 위판장 현대화(각100개, ~'26) 스마트농업 보급확대(30%)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7) 		
		· 노후청사 복합개발 계획 수립	› 유휴 국공유지, 노후청사 지속 발굴	 ▶ 본사업(최대 5만호, ~'35) 		
■ 서민·중산층		· 신유형 장기임대 추진계획 마련	ㆍ시범단지 선정·사업 추진	· 10만호 이상 공급(~`35)		
주거서비스 혁 ² (국토·금융)	긴	▶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행 (∼`27)			
(ጎተ 🛮 8/		· 부동산 PF 제도개선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ㆍ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25 ~)		
■ 의료비 부담 경 (복지·금융)	흥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성과 보상 확대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구분	`24.下	`25	`26~					
9. 교육 시스템 혁신								
■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교육)	· ^{가칭}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 대학규제 패키지 개혁 추진	· 자율적 학사 운영 등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단계적 추						
■ 직업계고 르네상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 	·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혁신 추진(교원 역량개발 지원 년						
구현(기재·교육)	▸ 반도체, 디지털(SW·AI 등) ▸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협익	중심 마이스터고 10교 이상 추 f형 특성화고'25교 추가 선정	도가 지정(~`27) (~`27, 누적 35개교)					
■교육비 부담 경감	> 늘봄학교 全초등학교 시행	→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 늘봄학교 全초등학생 확대 ・ 희망하는 全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 무상지원 확대 추진					
(교육)	↑ 유보통합 모델 확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유보통합 본격 추진(`25~)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교육·고용)	▶ 인적자원개발 체계 연구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0. 약자보호·재기지	l원 강화							
■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기재·복지)	· 소득보장제도 근로유인 제고 연구용역 추진	·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27						
■ 사회서비스 질 제고 (복지)	↑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시범도입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						
■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중기·금융)	·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 · 매출채권 팩토링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성장 우대정책자금 신설	· 소상공인 통합 DB 가동					

역동경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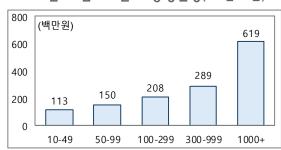
참고자료

- □ 기업 성장(Scale-up)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 o 기업이 성장하면서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생산성도 확대되는 경향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23년 기준)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22년 기준)



*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고용인원 기준) 고용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생산성*과 고용규모도 작은 편
 - * 제조업 분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21, 생산성본부): 한국 32.7%, 프랑스 58.5%, 독일 51.1%, 스페인 56.7%
 - 유망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

주요국 중소기업(250인 미만)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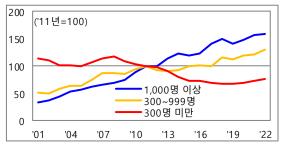
- * 출처: OECD(사업체·기업체 혼용, '21)
- ** 기업체 기준 고용비중은 77.7%(기업생멸행정통계,'22년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250인미만) 당 고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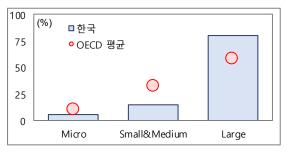
- * 축처: OECD
- ** 한국은 기업생멸행정통계('22년 기준, 기업체 기준)를 통해 자체계산
-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단계별로 존재
 - (창업·벤처) 초기 창업·벤처투자 지원은 크게 늘었으나, 민간 대규모 투자 부족, 회수시장 미발달* 등으로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아직 미흡
 - * 시드·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엑시트(Exit) 성공 비율(%, '18): (한국) 5.8, (미국) 12.3
 -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
 - 기업 성장시 **지원 급감, 분산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제도에 성장유인이 미흡

종업원수별 업체당 R&D 지출



* '11년 = 100, *출처: 한국은행('24)

기업 규모별 수출 점유율('20년 기준)



- * Micro(1~9인), Small(10~49인), medium(50~249인), Large(250인 이상)으로 분류(OECD)
- (중견·대기업) 중견→대기업 진입시 적용되는 규제 수*가 크게 증가 → 대기업으로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규제 수('23, 한경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183개 \rightarrow 1조원 185개 \rightarrow 2조원 209개 \rightarrow 5조원 274개 \rightarrow 10조원 342개
 - 규제 본연의 의도는 살리면서도, 그간의 경제성장, 新유형 기업 출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과거와 달라진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규제 재검토 필요
 -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고정(5조원 이상)되어 있어 지정 집단 수 지속 증가('17년 57개 \rightarrow '24년 88개), 대기업집단 內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에 핀테크 회사 제외 등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존재
 - 특히 도입된지 오래된 낡은 규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 여부,
 글로벌 스탠다드 등 감안하여 재검토 및 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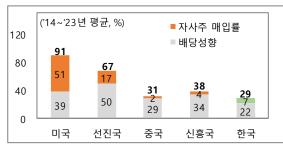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 노동생산성과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풍부
 - *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21, 생산성본부): 한국 32.7%, 프랑스 58.5%, 독일 51.1%, 스페인 56.7%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21, OECD): 한국 32.1%(300인 이상), 미국 57.6%, 프랑스 47.2%, 독일 41.1%, 일본 40.9%

- 2
- □ 주요국 대비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낮은 가운데 증시 저평가 지속
 - 지난 5~6년간 주요국 증시 큰 폭 상승에도 코스피는 2,000pt 중반 수준 횡보
 - * 지수 상승률(%, '17년말→'24.6월): (코스피)12.8 (S&P 500)104.2 (유로)39.7 (니케이)73.9 (대만 가권)116.4
- □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
-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
 - * 주요국 배당성향(%, 배당금/당기순이익, '22): (韓)20.1 (美)40.5 (英)45.7 (獨)40.8 (日)36.5
 -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 호소
 - * (법인세)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배당 확대시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 2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미흡
 - * 예)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후 상장 \to 모회사 주가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
 - 국내외 투자자·전문가들은 주주 권익 제고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 *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ACGA, 아시아 12국 대상): ('16) 8 ('18) 9 ('20) 9 ('23) 8
- ❸ 해외 증권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
 - * 평균 주식 보유기간('19~'23 평균, 개월): (코스피)8.6 (S&P)25 (니케이)12.9 (DAX)17.1 (FTSE)24.5
 - **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억불): ('15)69.6 ('17)139.9 ('19)196.0 ('21)703.5 ('23)771.0
 -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 부족*을 지적
 - *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14% 분리과세(2천만원 한도),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적 종합과세(최대 45%)
- □ 그 결과, 자산 부동산 편중 등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 *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22) : (한국)63.2 (미국)33.8 (일본)37.3 (영국)49.4

주요국 ROE/PBR/PER(%/배/배, '14~'23 평균)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신흥	미국	일본	선진
ROE	8.0	13.6	11.5	11,1	14.9	8.3	11.6
PBR	1.0	2.1	1.5	1.6	3.6	1.4	2.5
PER	14.2	16.0	13.1	14.3	21.8	16.9	19.7

주요국 주주환원율



- 일본은, '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23.3월 자본효율성·주가 고려 경영 요청** 시행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외이사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등
 - ** 자본효율성·주가 개선 계획 공시, 공시 현황별 기업 명단 공개,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 지수 도입
 - 주주 환원율 지속 상승 등으로 니케이 지수 큰 폭 상승 [('23.2말)27,446 → ('24.6말)39,583] * 주주 환원율(%): ('14)35 ('18)41 ('22)50 ('23)56
- 중국도 '24.4월 배당률 낮은 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무원 9조* 발표 *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시가총액 관리, 배당률 낮은 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우량 배당기업 인센티브 등

3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 지역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 유치에서 비롯되며, 인구유입과 상권 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 주요국은 지역에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하여 투자유치 활동 뒷받침, 중앙(코디네이터)과 지역(플레이어)이 투자유치 협업 파트너로서 역할 분단*
 - * (중앙) 첨단산업·공급망·기후대응 등 핵심산업·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국가 투자유치 전략 설계·유인체계 구축 (지방) 폭넓은 자원 및 권한을 부여받아 차별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해외사례] 지역 관점에서의 투자유치체계

- (일본) 지자체 자율적 유치체계 下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뒷받침 → <u>구마모토 TSMC 공장 유치</u>
 - * 지역별 인센티브 체계를 바탕으로 지자체·JETRO 지역본부가 주체적 투자유치 + 중앙정부는 자금·규제완화 등 지원
- (영국) 최근 지자체 주도적 투자유치 확대 → 맨체스터 지역 1,600여개 기업 투자유치
 - * 지방정부 별 특구(투자기업지역) 자율 운영, 지역 연합기구에 중앙정부의 예산·권한 이양하여 지역 주도적 투자 유치 촉진
- (미국) 州별 특화 산업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 등 유치제도 차별화 → 텍사스州 삼성 공장 유치
 - * 州별 별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연방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 및 핵심 산업 및 R&D 등에 대한 전폭적 보조금 지원
- □ 그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지역이 중앙의 투자유치 파트너로서 역할하기 위해 보완 필요
 - 내외국인 투자를 동등대우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는 외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유인은 부족
 - ② 특구·보조금·세제 등 각종 투자 지원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투자유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존재
 - ③ 지역발전 전략에 맞추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작아 지역특화 투자유치가 어려움

최근 투자유치 노력

- 외투·유턴 등 각종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규모 확대('24.1)
 - * '23→'24년 예산 규모(억원): (외투)500→2,000 (유턴)570→1,00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23년 2,031→'24년 2,126억원)·한도 상향(100→200억원, '23.10),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권한이양·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등 추진
 - * (기회발전특구) 지방 이전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장 신설·창업시 법인세 감면, 기회특구특례(규제완화) 도입 등
 - ** 자치조직권·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이양('23~) 및 지방세 감면 허용범위 개선 등

4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 **과거 환경**하에서 마련된 현 토지이용제도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 국토를 효율적·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 봉착
 - * (과거) 고도성장, 인구증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현재) 저성장, 인구감소,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1 '02년 국토계획법 제정¹'으로 마련된 **엄격한 용도지역 기반**의 현 토지이용제도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복잡성²' 중대
 - 1」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비도시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도시)·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으로 관리되던 분절적 국토이용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확립('O2년)
 -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역·지구 수: ('10) 321개 → ('15) 322개 → ('23) 336개
 - 또한 국토이용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 등으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토지이용 자유가 중첩규제에 의해 제약
- ② 난개발 방지 등 국토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농·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 국토의 62.7%를 차지하는 **산지***는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경제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한 상황
 - * '20년 기준, 산림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스웨덴·일본에 이어 4위 수준(총 면적 6,298천ha)
- □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가 저성장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환경하에 마련된 현 토지이용제도의 전반적·다각적 검토 필요
- 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여 공간 활용성 극대화
 - 민간의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토지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별적·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통합적 체계로 개편
- ② 귀농·귀촌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지 이용제도의 전향적 개선
 -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관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방향 정립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공장은 제외)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97)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 복합단지로 재개발('08~)
-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 기존 용도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복합용도지구(주거·상업·준공업 혼합)'를 도입하여('97)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지역으로 재개발('00~)



- 5
-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경활인구 확충**이 필수이나, 현재 외국인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15~64세, 만명): ('17) 3,757 → ('23) 3,657 → ('27°) 3,518 → ('32°) 3,343 경활인구 추이 및 전망(15~64세, 만명): ('17) 2,552 → ('23) 2,558 → ('27°) 2,490 → ('32°) 2,385
 - ** 향후 10년간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32년) → 외국인력·비경활내국인 적극적 활용 필요('24.3월, 한국고용정보원)
 - *** 주요국 외국인 비중('22, %): (싱가포르) 37.0 (獨) 16.8 (英) 14.3 (美) 13.9 (韓) 3.2 (日) 2.2
 - ※ 외국인 비중 1%p 증대시 경활인구 +32.5만명 증가 기대('22 기준)
 - 그간 비전문인력의 단기·양적 공급확대 위주 정책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가 부족하며 특히 전문인력 활용이 미흡*
 - * 외국인 전문인력수 증가(만명): (韓) '12년, 5.0 → '23년, 7.2, (日) '12년, 12.4 → '22년, 48.0 외국인 전문인력수 비중(취업가능 외국인 대비, %): ('10)5.4 ('15)3.9 ('18)3.5 ('20)3.4 ('22)3.9 ('23)5.0
 - 낮은 인재유치 매력도*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정착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낮아** 경활인구 확충과 우리 경제 기여에 한계
 - * 한국 인재유치 매력도('23, IMD 세계인재경쟁력순위): 43위/64개국
 - ** 국내 유학인재의 졸업후 정착비율('22, %, 교육부): (국내취업) 8.2% (국내진학) 11.0% (본국귀국) 28.6%
- □ 가사·돌봄,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부족*
 → 향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 소요**가 상당
 - * '22~'32년간 산업별 추가 필요인력('24.3월, 한고원, 만명): (보건복지) 13.8 (제조) 13.7 (숙박음식) 5.9 (농림어업) 4.5
 - ** '22~'32년간 산업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24.3월, 한고원, 만명): (보건복지) 7.9 (제조) 13.9 (숙박음식) 6.7 (농림어업) 6.7
 -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 필요
 - * 소멸위험지역(20~39세 여성/고령인구 1 미만, '21): ('23) 118개(전체 시군구의 52%) → ('47) 229개(100%)
- □ 다만, 외국인력 유입 과정에서 내국인 고용불안, 사회갈등 등 부작용 우려상존 →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 외국인력 유치·활용 전략 필요

- (호주) '글로벌 인재비자'를 신설해 특정 산업 분야(에너지, 첨단제조, 우주, 디지테크 등) 인재에게 조건 없이 6주 이내 온 가족에게 영주권 발급
- (영국) 글로벌 톱50 대학 졸업생이 2~3년 거주하며 첨단산업 분야(반도체·바이오 등) 취업활동 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비자(HIP) 신설
- (일본) 글로벌 톱100 대학 졸업생(졸업한 지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취·창업활동(취업 및 가족 동반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독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을 단축(8→5년, 숙련 노동자 등은 8→3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마련, 지자체에서 내국인-이민자 갈등 조정·중재 역할하는 통합관리자 제도 운영
- (시가포르) 국내노동법이 미적용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운영(월급은 타직종 저숙련노동자 임금 수준)

- □ (대내여건)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속에 시장 확대가 긴요
 - GATT 가입('67년) 등 다자무역체제 참여와 수출지향정책이 더해지며 '65년 110불이었던 국민소득은 '94년 1만불 돌파
 - 이후 WTO('95년), OECD('96년) 가입, 주요국과의 FTA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 → 국민소득 3만불대 국가로 도약
 - * '23년 기준 FTA 발효국(총 59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1.8% 차지
 - 한미FTA 이행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는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이 되었고, K-팝, K-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에 기여
 -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등 개정(총 9건)
 - 선진국 프리미엄 제품과 경쟁 → 국내기업의 기술·품질·디자인 개선효과
 - * 스틱형 무선청소기의 시초인 D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점유율이 80%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 및 상품성 개선으로 '20년 이후 D사의 점유율 10~20% 수준 하락
- □ (대외여건) 최근 지경학적 분절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에 입각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 확산
 - *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 상시화, 주요국들의 자국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본격화
- FTA를 매개로 한 양자·小다자 협력,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규범 형성, FTA 外 다층적 통상협력 전개 필요

[주요 FTA 성과]

- (한-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이후 연평균 5.3% 증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로 수혜
- (한-EU) FTA 발표전 536억불('10)에서 741억불('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
- (한-아세안)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2년 2위로 상승
-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CEPA 발효 전 121.5억불('O9)에서 246.8억불('23)로 2배 이상 증가
- (한-UAE)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23.10)
- (학-GCC)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 협상 타결('23.12)하여 新 중동붐 기반 마련
- ②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방산·원전·인프라 수출·수주 확대 및 투자 유치,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추진
- ❸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및 동반자 관계 강화

- □ 진입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경제의 **역동성,** 기업의 **혁신**을 **저해**
 - **경쟁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제품 창출을 통한 **국민** 전체의 **후생 중진** 가능
- □ 그간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 스타트업의 국내 규제애로 경험 64.3%,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49.7%) (경총, '24)
 -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中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이 17개로 조사(한국경제연구원, '23)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및 국내 스타트업의 규제강도 실태조사** 등 국가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 수준으로 평가
 -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역대 순위: ('98)21/28 ('03)22/30 ('08)29/34 ('13)32/35 ('18)33위/38개국
 - ** 스타트업의 37.7%가 '국내 규제강도가 경쟁국(美,中,日)보다 높다'고 답변('규제가 약하다'는 5.3%) (경총, '24)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순위



'18년 PMR 세부결과

	PMR 종합순위(33위)							
	관세장벽 (38위)		명령·통제적 규제 (38위)					
	네트워크 진입장벽 (35위)		소매가격통제(37위)					
-10	FDITHH(000I)	저브	공기업 지배구조(30위)					
신입	FDI장벽 (33위)	740	사기업 직접통제(24위)					
장박	서비스 진입장벽 (33위)	게입	네트워크 정부개인(20위)					
	외국기업차별 (30위)		중기업 립취(IS위)					
(JOF		(23위)	공공조달 접근성(13위)					
	무역장벽(28위)		이해관계자 참여(12위)					
	자격·허가 절차 간결성(21위)		시장경쟁 왜곡도(3위)					
	시장진입 행정부담(5위)		절차·규제의 소통·간소화(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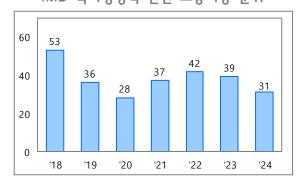
- □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시스템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 실효성 및 늘어나는 의원입법 규제** 등은 **보완** 여지
 - *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18년, '21년) 38개 회원국 중 **상위권**(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부문에서 2~7위)
 - ** 제·개정 규제법률 입법 건수(정부입법/의원입법, 대한상의, '22): ('17) 8/48 ('18) 4/47 ('19) 4/43 ('20) 8/70 ('21) 9/63 ('17~'21 합계) 33/**271**

[과거 규제개선 사례]

- '98~'99년 전부처 규제 실태조사를 진행, 부처별 핵심 규제 개선(폐지, 완화, 권한이양 등)
 - ㅇ 면허 등의 등록제 전환('98~'99) 전기공사업, 보험증개인, 건설업, 화물차 운송사업 등
 - ㅇ 진료권 제도 폐지('98) $^{1/2}$ 거주지 인근(진료권) 진료만 의료보험 가능 → $^{1/2}$ 타지역 진료 허용
 - ㅇ 외환거래 자유화('98~'OO년대) ^{기존}외국환관리법: 원칙규제·예외허용 →^{개선}원칙허용·예외규제로 자보거래 워칙 전환
 - * 개인의 증여성 송금 전면 자유화, 증권사·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 \circ 음식점 등(식품접객업) 심야영업 허용('99) ^{기존}시도지사가 심야영업 여부 결정 \rightarrow ^{개선}심야영업 전면 허용
 - \circ 주류 통신판매('98 \sim) $^{7/2}$ 전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 불허 \rightarrow $^{7/2}$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 □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인구감소 등 **노동시장의 규모가 감소**될 전망인 바, 제한적인 노동 투입으로 높은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생산성이 중요
 -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근무시간외**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보장 등을 통한 노동의 질 제고
- □ 한국은 **획일적 · 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음(OEO) 33위(37개국)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 저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음
 -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 재택근무 활용실적 국제비교(주당 사용일수, IMF·OECD·WB 컨퍼런스, '23.5): (韓)0.5일 (27개국 중 최하위) (日)1.1일 (평균)1.5일 (美)1.6일 (네덜란드)1.8일 (캐나다)2.2일 (싱가포르)2.4일 **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 연도별 공휴일 편차^{*}, 징검다리 휴일 등이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에
- 있어 비효율 발생
 - *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확대 중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1월1일·현충일 등은 아직 대체공휴일 인정 안함
- □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기 퇴근 및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
 - *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해외) 미국 30분(주마다 근로시간 차이), 영국프랑스 20분(근로시간 6시간 이상), 독일 30분(근로시간 6시간 초과) 등
 -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휴식의 효율성 제고 및 내수 진작에 기여
 - * 미국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 '황금연휴제도' 등 (일본: 성인의날, 경로의 날 등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 → 연휴 확대)
 - **급여 지급주기를 다양**(주1회, 2주1회, 월2회 등)하게 시행하여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근무환경 제고
 - *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월2회 또는 2주1회 급여 지급 활성화
- □ 근무제도·공휴일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선진형 근무·휴식시스템 구축하여 일·생활 균형 달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

IMD 국가경쟁력 관련 노동시장 순위



OECD 33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1	콜롬 비아	2,381	11	폴란드	1,712
2	멕시코	2,335	12	캐나다	1,702
3	코스타리카	2,242	13	호주	1,693
4	칠레	2,026	14	그리스	1,687
5	이스라엘	1,905	15	헝가리	1,661
6	한국	1,904	16	일본	1,626
7	미국	1,822	17	아일랜드	1,624
8	에스토니아	1,783	18	포르투갈	1,607
9	뉴질랜드	1,747	19	리투아니아	1,595
10	체코	1,717	20	슬로베니아	1,594
	OECD 평균			1,719	

[해외사례]

• 주요 국가의 공휴일 지정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중국
공휴일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1일
요일지정	×	4일	6일	7일	5일	×
대체공휴일	날짜 지정 공휴일 일부(13일)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 각국 노동자의 휴게시간(최저기준)
 - * 미국은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영국·프랑스·독일·일본·포르투갈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7.8	일 근로시간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한국						30분	1시간			
영국·프랑스							20분			
독일							30분 45		45분	
일본							45분 1시간		·l간	
포르투갈							1시간			
노스다코타주·뉴햄프셔주 ·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 등							30분			
메릴랜드주·메인주·오레 곤주·테네시주 등							30분			
델라웨어주·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 등							30분		<u> </u>	
네바다주·네브레스카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30분)분	

- □ 우리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자본이 취약*하며, 특히 대인신뢰도가
 하락 추세** → 이해와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비용이 높은 상황
 - * 국가번영지수(英 레가툼研, '23, 167개국): (종합) 29위, (경제) 9위, (사회자본) 107위
 - ** 대인시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研): ('14) 73.7 \rightarrow ('16) 66.0 \rightarrow ('18) 69.2 \rightarrow ('20) 50.6 \rightarrow ('22) 54.6
- □ 기부 문화 조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비용을 낮추고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 가능
 - **기부**는 소득계층·지역·세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발적 재분배**이자, 정부 분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의의
 - 기부자에게도 사회적 기여에 따른 **효능감*, 활력 부여**** 등 긍정적 효과
 - * 기부한 이유(%, '23 사회조사): (남을 돕는 것이 행복) 27.5, (어려운 사람 돕거나 사회문제 해결) 26.2, (종교적 신념) 18.7
 - ** 기부는 기부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기부자에게 삶의 활력이자 동력으로 작용(기부트렌드 20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그러나, **기부 경험이 '23년 23.7%**로 10년 전('13년 34.6%)에 비해 **급격히 감소*** 했으며, 향후 기부의사('23년 38.8%)에 비해서도 낮음(사회조사, '23)
 - *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12년 O.82%에서 '22년 O.70%로 감소(나눔실태 2022)
- □ 우리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기부 보편화**뿐만 아니라 기부금액^{*} 및 기부문화 확산^{**} 기여도가 높은 **고액기부 활성화** 필요
 - *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 기부금액(2,31조원)은 전체 종합소득자 기부금액(3,79조원) 대비 60,9% 차지(나눔실태 2022)
 - **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40.6%)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가장 높음(나눔실태 2022)
 - 간편기부·재능기부 등 기부방식 다양화*, 기부 홍보 등 **기부에의 관심** 제고 및 기부금단체 신뢰성 제고** → 기부참여 고취
 - * 지로·계좌이체·모금함 등 전통적 기부방식은 감소세인 반면 행사·캠페인 참여형 기부는 증가 양상(나눔실태 2021)
 - ** 나눔 이해당사자들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고 그것이 수혜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피드백 선호(나눔실태 2021)
 - 기부 관련제도* 개선 등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할 필요
 - * 예)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 ('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총 36건 인가되었으며, '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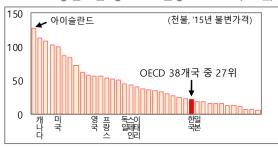
- (GDP 대비 기부 규모) 'OO~'2O간 미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1.9%~2.2%이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0.8% 수준(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연구소)
- (공익신탁 활성화) 미국은 공익잔여신탁·공익선행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방식을 허용
 - * 공익잔여신탁: 기부자가 생존동안 운용수익을 받고, 사망시 잔존재산은 공익단체 귀속 공익선행신탁: 운용수익은 공익단체 기부, 기간종료시 기부자(기부자 지정 수익자)에 잔존재산 귀속

- ① (배경) 기후변화·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구조 문제, 해외 공급망 불안 등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
- ② (생산성) 청년 농업인 유입 부족, 영세농 중심의 농업구조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우려
 -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美 USDA): (아이슬란드)106.7 (포르투갈)86.1 (칠레)25.9 (폴란드)19.8 (터키)15.9 (아일랜드)12.5 (룩셈부르크)12.2 (독일)10.1 (프랑스)9.8 (노르웨이)8.7 (한국)8.3
 - **농업법인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문성 제고, 판로 확보** 등이 필요하고, 생산성 높은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가 **더 요구****되는 상황
 - * 농업법인당 영업이익(백만원): ('18)36 ('19)22 ('20)32 ('21)52 ('22)34
 - ** '24년 농업 R&D(농식품부·농진청)는 0.9조원으로 전체 R&D 예산(26.5조원)의 3.5% 수준

65세 이상 농가 비중 및 영세농 비중



OECD 농림어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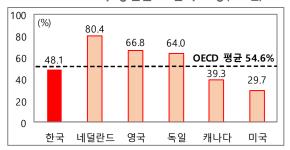
- * 출처: World Bank
- ③ (유통구조) 유통주체 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공영도매시장 경유 방식이 상당 비중을 차지(52%, '22년)하면서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
 - * '22년 농축산물 유통비용구조(%, aT): (생산자수취)50.3 (유통비용)49.7; (직접비)16.9 (간접비)17.1 (이윤)15.7
 - 스마트 APC(현재 14개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산지의 판매 역량이 미흡**하고,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 여전
 - * 유통비용률(%, 유통비용/가격, aT): ('17)44.4 ('18)46.7 ('19)47.5 ('20)47.5 ('21)48.8 ('22)49.7
- ④ (해외공급) 해외 농업자원 확보량은 증가세이나 아직 소규모·농장 형태의 진출이 많고,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최근 반입 실적은 하락
 -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 가능성 확대, 국내 농업자원의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

해외농업자원 개발·반입 실적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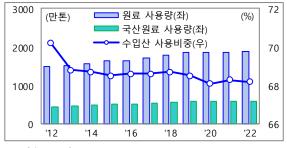
OECD 주요국 농산물 수입액 비중(`22년)



* 출처: UN FAO / ** 농산물 수입액 / (농산물 생산액 +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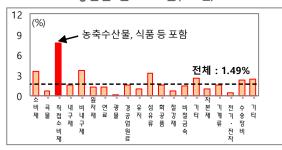
- 식품 원료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
 - * 관세부과율(%, '22년): [전체|1,49 (육류)6,95 (어류)8,39 (낙농품)9,61 (채소)23,43 (과일)7,93 (커피·차)4,72 (제부)8,83

식품원료 사용규모 추이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성질별 관세부과율(`22년)



* 출처: 관세청 / ** 관세부과율 = 관세징수액/수입액

[해외사례 ●] 농가 규모화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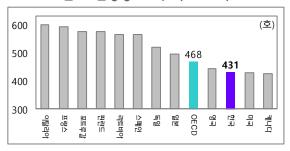
- (네덜란드) 우리의 절반 수준인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농가 규모화*, 기업의 농업 참여** 등을 통해 원예산업 생산 세계 4위('19), 농산물 수출 세계 3위('22) 등 세계적 수준의 농업 경쟁력 확보
 - * 농업 경영체당 경지면적: (네덜란드) 28ha (184.6만ha/64,000개), (한국) 1.7ha (167.9만ha/100만개)
- ** 기업이 직접 자본·기술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영, 라이크즈반(세계 8위 종자기업), 쿠보(세계 1위 유리온실 기업) 등 대기업 다수
- (덴마크) 농업 인구는 감소 중이나 유럽 최대규모의 수직농장인 노르딕하베스트(Nordic Harvest, '20년) 건립 등 스마트팜 도입을 확대하여 연간 농업 수출액 180억불 달성('22년, OECD 국가 중 15위)
 - * 덴마크 스마트팜(정밀농업) 도입 농가비율(%): ('18)23.4 ('19)28.4 ('20)31.9 ('21)36.0 ('22)37.0 ('23)40.0
- (일본) '60년대 세계 곡물가격 상승 및 선박운임 상승으로 위축된 축산업 회복을 위해 종합상사를 주축으로 해외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도 기술·자금협력 중심으로 브라질 세라도 지역 개발('79~'01)

[해외사례 ②] OECD 가입국 먹거리 관세 인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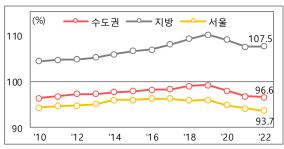
- (캐나다) '17년 식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34개 식재료(채소류, 곡류, 향신료 등) 무관세화
- (노르웨이) '15년 관세율이 낮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산물 114개에 대한 관세 폐지
- (멕시코) 가계 구매력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세계 평균 대비 과도한 관세(최대 254%)를 적용받는 농축산물 31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2~'17년간 인하
 - * 관세율 감축 품목 예시(%): [감자] 245 \rightarrow 175 [베이컨] 254 \rightarrow 150 [육류] 234 \rightarrow 175

- □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공급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1인 가구 분화***, **주거방식 다양화**(위케이션·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등에 대응 하기에는 **주요국 대비 주택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
 - * 1인가구(백만, 〈비중%〉): (`15)5.2〈27.2〉(`18)5.8〈29.3〉(`19)6.1〈30.2〉(`21)7.2〈33.4〉(`22)7.5〈34.5〉(`30°)8.3〈35.6〉
 -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주택은 택지부족·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제약되며 서울·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9년부터 하락하며 100%를 하회
 - * 국지적·계절적 수요 변화(매물변화 +5% 내외) 등을 감안할 경우 100%를 상회하는 수준 주택재고 필요
 - ⇒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PIR*)을 확대시키며 주택 유무에 따른 격차 확대
 - * PIR(Price to Income, 배): ('12)3.8 ('14)3.8 ('16)3.8 ('18)4.0 ('22)4.7

인구 천명당 주택수(OECD)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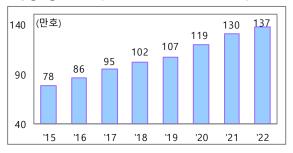


- □ 임대주택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공공은 청년층 니즈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이 제약
 - 공공임대의 경우 공급방식 다양화·물량 확대를 통해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수요에 맞는 도심지 임대주택은 부족**
 - * 공공임대주택 비중(%, OECD): (네덜란드)34.1 (영국)16.7 (프랑스)14.0 (한국)8.9 (OECD 평균)6.9 (미국)3.6 (일본)3.2
 - ** 서울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경쟁률(LH 기준): ('20)43,7:1 ('21)70,7:1 ('22)104,4:1 ('23)129,6:1 ('24, 1분기)254,5:1
 -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도 진행중

서울지역 임대경쟁률(LH·SH)



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 수 추이(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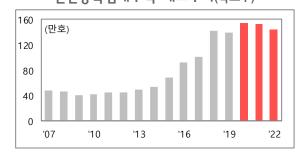


- 민간임대의 경우 영세·단기, 비등록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서비스 시장 형성이 제약
 - 임대주택의 약 80%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제도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등록 임대이며 등록임대*도 대다수가 1호 보유 사업자
 - * 보유 임대주택수별 임대사업자수(명): (1호 보유)193,070 (전체 임대사업자의 99%) (100호 이상)213

우리나라 일반가구 2,177만호						
자가	임대					
	공공임대					
1,252만 (57%)		등록	비등록	81만 (4%)		
(37.18)	186만 (8%)	144만 (7%)	514만 (24%)	(470)		

- * 국토교통부「2022 주거실태조사」,「임대주택통계」참조
- 등록임대주택 재고가 최근 감소하고 전월세 주택 매물* 변화도 확대되는 등 임대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 불안정성 확대
- * 전국 전·월세 매물(만호): (`21.6)12.1 (12)16.8 (`22.6)17.8 (12)33.9 (`23.6)23.9 (12)23.1 (`24.4)21.2
- 전월세 주택 거주기간도 3년 이내인 경우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 중산층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

민간등록임대주택 재고추이(국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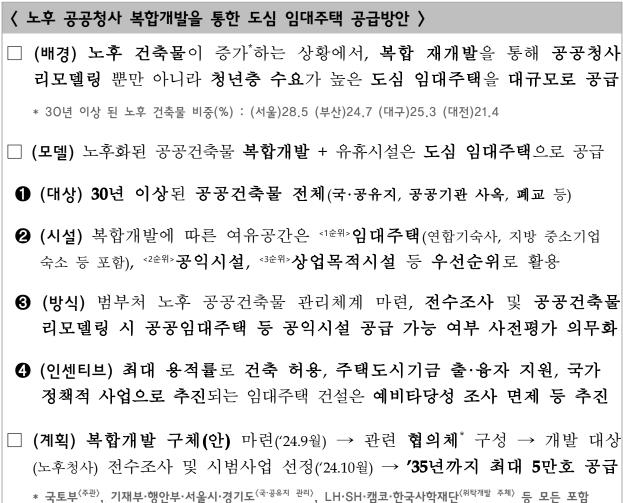
임대차 종류-거주기간별 비중(주거실태조사)



[해외사례] 일본 및 미국의 경우 규모화·전문화된 업체 중심으로 임대주택 시장 운영

- * 일본 임대주택 소유형태 (%, `14년): (개인소유-임대)21 (개인소유-법인임대)43 (법인소유-임대)19 \ `18년 기준 80%(1530만호)가 민간임대이며 상위 6개 업체가 약 25%(400만호) 소유
- * 미국 임대주택 법인소유 비중(%): ('90년대)15.6 → ('00년대)20.0 → ('10년대)49.3

(중산층을 위한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 도입방안 〉 □ (개념)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천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 □ (도입방안)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전문화 및 양질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시장 규제를 합리화 ○ (임대료) 사업자의 장기임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워 10년 의무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 → 임대주택 재고 촉적 저해 ** (現) 임차인 변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대료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필요,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시세 대비 70~95%) 등 ○ (세제)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제(취득·종부·법인세 등) 합리화 검토 * 예)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가능 □ (참여 다양화)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위한 제도운영 검토 * (現)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집·간접투자 제한, 부동산 투자시 자급여력비울 25%(K-ICS 기준) 적용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 □ (배경)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공공청사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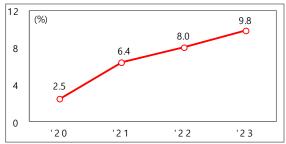


- □ 우리나라 총진료비는 **120.6조원**('22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간병비 증가^{**} 등으로 간병에 대한 국민부담 확대
 - * 연도별 총 진료비(건보공단): ('16) 78.1조원 → ('18) 93.3조원 → ('20) 102.8조원 → ('22) 120.6조원 ** 사적 간병비(서울대 간호대학, 복지부): ('08) 3.6조원 → ('18) 8.0조원 → ('22) 10조원(추정)
 -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8.0**조원 규모('23년 기준)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 ¹인구 고령화^{*}로 인한 총진료비의 증가, 간병 수요 및 간병비 지출 증가, ²非중증 비급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등 비급여 시장 확대^{**}
 -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추계(통계청, '23): ('24) 19.2% → ('25) 20.3% → ('28) 23.6% (연평균 +1.1%)
 - ** 비급여 진료비(건보공단): ('10) 8.1조원 → ('21) 17.3조원
 - (인구 고령화) 고령충의 경우 의료 이용*의 빈도·진료량이 많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 특히 간병 수요 및 간병비 지속 상승**
 - *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 횟수('22, 복지부): 전체 21.5회 vs 고령층 43.1회
 - **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20) 2.7% \rightarrow ('21) 6.8% \rightarrow ('22) 9.2% \rightarrow ('23) 9.3%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 ** 사적간병(가족+유료) 의존율 평균 61.2%('23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복지부)
 - (비급여·실손보험) 현행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에서 非중증 비급여 혼합진료* 유인, 소비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수준 선택에 애로
 - * (실소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복지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등

의료비 규모 변화('16년, '22년, 단위:조원)



간병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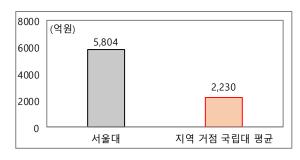


- 일본은 '94년도에 신간호체계를 수립하여 사적 간병인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 ※ 미국, 영국, 독일 등도 환자와 면회객 간의 상호 감염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해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 제공
- 미국, 호주 등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 적정성 등을 통제하는 관리체계 시행 중

- 13
- □ 대학교육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 대학교육지수: ('19) 24위 → ('24) 12위(67개국 중) / 대학교육 경쟁력(IMD): ('19) 55위 → ('24) 46위(67개국 중)
 -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위율 감소 및 취업률 하락*, 수도권에 비해 낮은 학생 교육비 투자** 등 경쟁력 저하 추세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등의 요구 증가
 - * 일반대 시압생 충원율(% '21, 교육부): (수도권) 99.2 (비수도권) 92.2 / <u>졸압생 취업률(%</u> '22, 교육부): (수도권) 71.2 (비수도권) 68.5
 - **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만원, '22, 교육부): (서울대) 5,804 vs.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 평균) 2,230
 - o 규제 등으로 대학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우영** 및 **구조개혁에 한계**
- □ 20년 뒤 입학자원이 현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 전망
 - *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46만명 유지 가정시 '40년에는 약 20만명 미달이 전망됨('21년 48만명 → '40년 26만명, 교육부)
 - o 대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 고려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하락은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 * 지역경제 파급효과(억원, 한국교육개발원): (전북대) 8,143 (상지대) 2,153 (울산대) 1,193
 - ** '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이며(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대학 22개교 중 21개교가 비수도권에 위치('24,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교육지수	पार्गज्यभ्रत्रस्	국가경쟁력
중국	3위	14위	14위
미국	1위	28위	12위
인도네시아	54위	25위	27위
영국	2위	37위	28위
인도	9위	34위	39위
한국	12위	46위	20위

대학교육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24, IMD평가) 수도권·비수도권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 캘리포니아는 역할·전공 등의 조정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던 공립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 중심대학(CSU), 산업중심대학(CCC)로 구분하고, 그중 연구중심대학 10개교에 대해 특성화 영역*별로 지원
 - ⇒ 지역 내 공립대를 세계적인 명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
 - * 예) UC버클리(공학), UC샌프란시스코(의학), UC데이비스(농업, 생명공학), UC산타크루스(항공우주과학) 등

- □ '08년 **마이스터고 신설** 등 직업계고 육성, 고졸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취업률 감소, 입학자수 감소 추세
 - * 취업률은 'O8년 대비 '17년 약 3배 증가(18.5→52.4%)하였으나 '23년 27.8%로 감소(교육부)
 - 학생수 감소*와 함께 취업률 하락,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증가
 - * '12년 대비 '22년 입학자수는 일반고는 △29%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7% 감소(교육부)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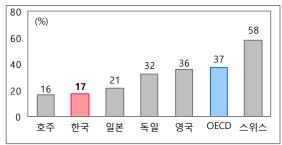
90 취업률 (%) 진학률 73.0 진로 미결정 비율 60 46.5 29.8 27.8 30 18.5 25.7 8.5 '17 '23 '20 * 출처: 교육부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직업계고 분류 및 현황('23년)

종류	목적	취업률	진학률	학교수	학생수
- σ π	중류 국격			(7H)	(민명)
도쿠식에	산업 맞춤형 실무 기술인재 양성	74	7	54	1.7
특성화고	학생 소질・적성에 따른 특화 교육	53	50	462	17.3
일반고	직업반이 설치된 일반고	37	62	63	0.9
	전체	56	47	579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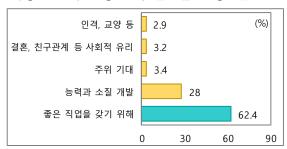
- * 출처: 교육부
-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 직업계고의 **산업별 대응** 및 **맞춤형 교육·취업지원 강화 필요**
 - (미래산업 변화 대응)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대응 필요 + 신산업· 신기술을 가르칠 전문 교위 부족
 - * 미래신업 사회에 적합한 직업계고 체제계편 등 위해 부족한 전문교사 양성, 역량 강화 등 논의가 필수적(22, 직업계고 체제개편 방안연구)
 - (졸업 후 성장경로 지원) 취업, 후진학, 지역 및 직장 안착 등 졸업 이후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 성장경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 그가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서 고졸자 취업 지원에 비해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22, 직능연)
 - * 직업계고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경력경로를 찾아주고 사회인으로 정착함 수 있도록 변화 필요(23, 국회토론회)

주요국 즛등직업교육 참여율



* 2023 OECD 교육지표 ('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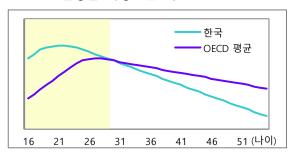
학생이 대학 이상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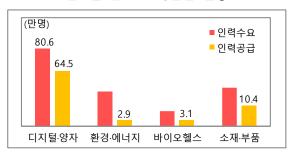
* 여가부 '2023 청소년 통계', 대학 이상 진학 희망자(88.2%) 대상 조사

- 15
- □ 우리 성장의 핵심자원인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1위에 불과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3년)
 - 학령기 역량 수준은 OECD 상위권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 수준이 빠르게 하락하며 성인기에는 OECD 평균에 미달(OECD-PIAAC, '13년)
 - * OECD-PIAAC(2013): 〈16~65세〉 언어(상위 50%), 수리(70%), 문제해결(80%), 〈16~24세〉 언어(상위 17%), 수리(22%), 문제해결(5%)
 - 근로자의 업스킬(up-skilling)·리스킬(re-skilling)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며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 발생
 - * 신기술분야(디지털, 바이오, 소재·부품 등) 5년간('24~'28) 인력 42.8만명 부족 전망('24, 직업능력연구원)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13)



신기술 분야 부족인원 전망



- □ 全연령·全산업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현행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수요 중심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신산업분야 교육·재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기업이 수요** 하는 **양질의 실전형 인재가 부족**하고 **훈련기관 역량도 미흡**한 상황
 - 근로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고, 커리큘럼도 역량개발과 괴리된 교양 위주
 - * "21세기 문맹은 배우지만(learn), 배운 것은 버리지(unlearn)못하고 다시 배우지(relearn) 못하는 것"(앨빈 토플러)
 - ** 재직자 평생교육 미참여 사유(직능연, '22): (1위) 시간 부족(25.9%), (2위) 교육비 부담(16.1%), (3위) 낮은 활용도(11%)
 - 상호보완적인 평생교육-직업훈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에 한계, 기관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 발생

-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
 - *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22년): (한국) 14.8% (OECD 평균) 21.1%
 -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를 **강화**할 필요
 - * (국정과제 43-1)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기준증위소득 35% 목표)
-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구조 재설계 필요
 - 생계급여 탈수급 경계선상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근로를 늘려도 **근로시간 투입 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
- □ 실업급여 제도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수준으로 인해 수급자의 근로유인이 저해되는 경향('22,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최저임금 일자리의 세후근로소득 대비 실언급여액

150 (%) 100 50 44 50 56 61 66 70 76 105 0 영국 터키 OECD 독일 호주 스페인 일본 한국

연도별 실업급여 하한액과 재취업률



[해외사례] 영국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 적용
 - * 근로를 늘려도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왜곡을 방지하고, 추가근로에 대한 유인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급여 대상자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